

#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 오경섭 · 임예준





#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 오경섭 · 임예준

##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인 쇄 2017년 7월  
발 행 2017년 7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손기웅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한디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인 쇄 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ISBN 978-89-8479-876-2 93340  
북한 노동자[北韓勞動者], 해외 파견[海外派遣]  
321.543-KDC6 / 331.544-DDC23 CIP2017017175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02-734-6818·사무실 : 02-394-0337

#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 Contents

요약 .....	vii
<b>I. 서론 .....</b>	<b>1</b>
<b>II. 연구 방법 .....</b>	<b>5</b>
1. 조사대상의 선정 .....	7
2. 인터뷰 방식 .....	9
<b>III.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인원과 계약 .....</b>	<b>11</b>
1. 파견 인원 .....	13
2. 해외노동자 파견 결정 .....	21
3. 계약 .....	27
<b>IV.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실태 .....</b>	<b>41</b>
1. 직업선택의 자유 .....	43
2.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	52
3.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	61
4.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69
5.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	81
<b>V. 결론 .....</b>	<b>95</b>
참고문헌 .....	9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01

# 표 목차

## Table

〈표 II-1〉 피면담자 정보 요약 .....	8
〈표 III-1〉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인원 .....	14
〈표 III-2〉 북한 국적자 러시아 체류현황 .....	15
〈표 III-3〉 러시아 체류 북한 노동자 인원 .....	16
〈표 III-4〉 중국 체류 북한 노동자 인원 .....	18
〈표 III-5〉 기존 자료와 인터뷰를 통한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인원 ..	20
〈표 III-6〉 2007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기관 .....	21
〈표 III-7〉 2016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기관 .....	22





# 후 포



본 연구는 최신의 집합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해외파견 노동의 실체에 더욱 가깝게 접근해보려는 노력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 해외파견 노동의 실태에 대해 접근한다. 첫째, 해외파견 노동의 외적인 측면이다. 여러 가지 자료와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전체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규모를 새롭게 추정해보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맺는 계약 방식과 해외파견 과정을 추적했다. 둘째, 북한 해외파견 노동의 내적인 측면, 즉, 인권 침해 실태 여부를 살펴보았다.

해외파견 노동의 외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III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장을 집필한 오경섭은 새롭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추정보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의 숫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근거와 새로운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신과 임예준이 공동집필한 IV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자들의 봉급, 노동 조건 및 안전, 사생활 침해, 강제 노동 등의 측면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분석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해 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강제노동의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강제노동의 기준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며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본 연구 및 기존의 선행 연구의 결론이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의 한계 상, 조사 대상의 범위가 러시아와 중동만으로 좁혀졌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해외파견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는 중국 및 유럽 등의 현지 조사를 통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온 파견 노동자들 및 현지 노동자들과의 임금 수준, 계약 관계, 그리고 노동 환경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비교하는 거시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북한 해외노동자, 북한 파견 노동자, 북한인권



# I. 서론<sup>1</sup>

---

<sup>1</sup> 북한 해외노동자 인터뷰와 녹취록 정리에 수고해준 통일연구원의 탁민지 연구원에 감사를 드린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가 인권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및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송금 차단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미국의 재무부는 2016년 6월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송금을 차단하는 것이었다.<sup>2</sup>

인권문제를 떠나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는 현 단계에서 실상에 대해 많은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체 파견 노동자의 규모는 여러 추정치를 종합하여 추측하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이 노동자들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현금 수입의 규모도 확실치 않다. 또,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신의 집합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해외파견 노동의 실체를 파악해보려는 노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첫째, 해외파견 노동의 외적인 측면이다. 여러 가지 자료와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전체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규모를 새롭게 추정하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맺는 계약 방식과 해외파견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둘째, 북한 해외파견 노동의 내적인 측면 즉, 인권 침해 실태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2016년 및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서도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한층 더 보강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sup>2</sup> 윤정호, “美, 北 해외노동자 송금차단…최대 무역상대 中도 겨냥한 것,” 『조선일보』, 2016.6.3.

본 연구는 2장에서 조사대상의 선정과 인터뷰 방식을 소개한 후,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해외파견 노동의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우선 여러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의 규모를 분석하고 있는데, 과거 다른 연구에서 추정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113,300명에서 147,600명까지의 해외파견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추정치와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의 인권백서, 그리고 다른 연구 기관에서 추정한 것보다 매우 큰 숫자이다. 물론 연구 여건의 한계 때문에 이 추정치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추정방법과 근거의 제시를 통해 앞으로의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연구에 자극과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성격은 매우 다르지만 과거 한국이 광부와 간호사들을 독일에 보낸 것처럼, 해외파견 노동 자체는 노동과 자본의 국경 없는 이동이 자유로워진 이 시대에 그다지 문제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자유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다른 북한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누릴 기회가 있다고 해도, 이들이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4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등 세계인권선언 및 북한이 당사국인 주요 인권규약에서<sup>3</sup> 규정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분석해보려 한다.

<sup>3</sup>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의 선정

이 연구를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피면담자의 간략한 정보는 <표 II-1>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가명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총 26명의 피면담자 10명(<표 II-1> 중 17에서 26번 피면담자)은 기존 통일연구원의 탈북자 인터뷰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외파견 노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나머지 16명은 이 연구를 위해 새롭게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3명 나진구(가명), 정경석(가명), 홍승학(가명)은 이미 통일연구원 탈북자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이었다. 즉, 총 26개의 인터뷰 중 중복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23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통일연구원 탈북자 인터뷰는 해외노동 경험뿐만 아니라 탈북 과정 및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반면 이 연구를 위해서는 해외파견 노동 경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세 명의 인터뷰도 함께 추가하여 연구의 근거로 사용했다.

〈표 II-1〉 피면담자 정보 요약

연번	각주 처리	파견기간	파견국
1	김청화(가명)	약 2년 4개월	러시아
2	이승훈(가명)	약 3년	러시아
		약 2년	러시아
3	최순우(가명)	약 5개월	쿠웨이트
4	김홍민(가명)	약 1년	쿠웨이트
		약 3년	러시아
		약 1년	러시아
		약 1년 3개월	러시아
5	현태준(가명)	약 6년 5개월	러시아
6	나인현(가명)	약 3년	러시아
7	신강섭(가명)	약 1년 5개월	러시아
8	민다혁(가명)	약 1년	러시아
9	김석영(가명)	약 3년 6개월	러시아
10	이종우(가명)	약 3년	쿠웨이트
		약 1년 5개월	러시아
11	조명택(가명)	약 3년	쿠웨이트
12	나진구(가명)	약 3년 9개월	러시아
13	정경석(가명)	약 7년	러시아
14	김강식(가명)	약 2년 6개월	러시아
15	홍승학(가명)	약 3년	러시아
		약 1년	러시아
16	신기영(가명)		
17	NKHR2013000196	약 9개월	아랍에미리트
18	NKHR2014000112	약 1주	러시아
19	NKHR2014000202	약 4년	러시아
20	NKHR2015000144	약 2년	쿠웨이트
		약 2년	러시아
21	NKHR2015000145	약 2년	러시아
22	NKHR2016000163	약 3년	아랍에미리트
		약 1년	러시아
23	NKHR2013000133	파견 실패로 추정	
24	NKHR2013000170	중국 연고자로 파견 실패	
25	NKHR2014000063	약 4년 6개월	러시아
26	NKHR2015000068	약 3년 8개월	러시아

조사 대상자 중 대부분은 러시아 파견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이었다. 예외적으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에 파견된 사람도 6명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4명은 러시아와 중동 파견 경험을 모두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결정적인 한계는 파견 대상지역이 러시아와 중동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 쪽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신기영(가명)을 인터뷰 하였다.

또한 피면담자 중 7명은 해외파견 경험이 90년대 이전에 이루어져서 그다지 정보의 효용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면담자들은 대부분 최근에 해외파견 노동을 경험한 바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현재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 2. 인터뷰 방식

인터뷰는 주로 통일연구원에 피면담자들을 초빙하여 이루어졌으나, 피면담자의 사정(주로 지방 거주나 바쁜 회사 일정 등)으로 통일연구원 방문이 어려운 몇몇 경우는 직접 연구자들이 이들을 방문하여 인터뷰 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피면담자들의 동의를 구해 그 내용을 녹취하였다. 녹취를 원하지 않는 피면담자들은 자유롭게 녹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이런 경우는 면담내용을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하여 정리하였다.

보통 면담자 2인이 참여하여 1인은 구술내용을 정리하고 1인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통일연구원의 회의실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공간이어서 피면담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뷰

에 응할 수 있었다. 피면담자의 사정으로 통일연구원 외부에서 인터뷰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인터뷰 장소는 이와 유사한 회의실 등을 대여해서 이루어졌다. 모든 인터뷰는 피면담자의 정신적 긴장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준수되었다. 모든 피면접자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도 철저히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피면접자들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피면담자들은 모두 사후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 Ⅲ.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인원과 계약





## 1. 파견 인원

그동안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해외노동자 인원은 4만 6천~8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한국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 현황’ 자료에서 2013년 1월 기준으로 북한이 40여 개 국가에 4만 6천여 명 정도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발표했다.<sup>4</sup> 미 국무부는 2016년 연례 국가별인권보고서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를 5만~8만 명이라고 발표했다.<sup>5</sup> 그 외에도 국내 연구기관들은 북한 해외노동자 인원을 추정해서 발표했다.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 연구원은 북한 해외노동자는 40여 개국에 약 6만~6만 5천 명이라고 밝혔다.<sup>6</sup> 아산정책연구원은 2013년 기준으로 북한 해외노동자가 5만 여 명이라고 추산했다.<sup>7</sup>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세계 각국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와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 해외노동자가 주로 중국·러시아에 파견되었고,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버마, 캄보디아, 적도기니, 이디오피아, 가나,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몰타, 말레이시아, 몽고, 모잠비크, 네팔,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싱가포르, 남수단, 탄자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일한다고 밝혔다.

<sup>4</sup> 황대진, “김정은 집권 1년 새, 北 외화벌이 노동자 1만 명 급증,” 『조선일보』, 2013.7.9.

<sup>5</sup>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6 Human Rights Report,” <<https://www.state.gov/j/drl/rls/hrrpt/2016/eap/265344.htm>>.

<sup>6</sup>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 (서울: 코리아정책연구원 2012), p. 16.

<sup>7</sup> 신창훈·고명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인권』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5), pp. 21~22.

〈표 Ⅲ-1〉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인원

국가	인원(명)
러시아	20,000
중국	19,000
몽골	1,300~2,000
쿠웨이트	5,000
아랍에미리트	2,000
카타르	1,800
앙골라	1,000
폴란드	400~500
말레이시아	300
오만	300
리비아	300
미얀마	200
나이지리아	200
알제리	200
적도기니	200
에티오피아	100
계	52,300~53,100

출처: 신창훈·고명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인권』, p. 30.

그동안 발표된 북한 해외노동자 인원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북한이 노동자를 가장 많이 파견한 중국의 북한 노동자 인원내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정치도 매우 적다. 또 대부분의 북한 해외노동자에 관한 보고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통일연구원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인원을 2015~2016년을 기준으로 추산했고, 러시아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인원을 추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인원은 러시아 출장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러시아 북한 해외노동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추정했다.

통일연구원이 러시아 출장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3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는 2015년도 러시아 기업들에게 할당한 북한 노동자 고용가능 쿼터를 47,279명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러시아 연방이민청의 2015년 7월 16일자 외국인 체류현황 자료를 보면, 북한 국적 체류자는 34,020명이고, 이중에서 근로 가능한 18세 이상은 33,682명으로 나타난다.

〈표 III-2〉 북한 국적자 러시아 체류현황

(단위: 명)

	17세 이하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성	138	1,748	7,737	13,606	5,850	493
여성	200	2,161	563	400	691	433
합계	338	3,909	8,300	14,006	6,541	926
총 인원	34,020					

\* 출처: 러시아 연방이민청, 통계연감(2015.7.16.), 최영윤,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통계데이터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 p. 109 재인용.

러시아 연방이민청의 북한 노동자 체류현황은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탈북자 심층면접과 각종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한 탈북자는 러시아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가 3만 명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95년도인데 제가 1연합이었는데, 2연합까지 있어요. 1연합·2연합 그렇게 되는데, 1연합에 10개 사업소가 있었는데, 매 사업소마다 러시아 직원들이 그저 한 20~30명 되고 그렇더라고요. (러시아) 각 주 소재지들 마다 뭐 100명 이상. 심지어 로블시빌스키에는 1,000명 들어가 있어요. 그 도시에... 크라스냐르스크라고. 거기도 한 1,000명. 그렇게 된다고 하고. 하바로프스크, 매 도시마다 페테르부르크, 크라스라다하르, 모스크바, 큰 도시마다 뭐 몇 백명, 거의 1,000명 가까이. 건설로

들어가는 게, 건설하고, 건설과 임업이 러시아에 총 3만 명이  
상 들어갔다고 해요. 러시아 방송에서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  
고. 몇 만 명이 있다고 북한사람들이...”<sup>8</sup>

이영형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 러시아 연방이민청의 자료에 합법  
적으로 등록한 북한 노동이민자의 수가 32,600명 이상이었다.<sup>9</sup> 북한인  
권정보센터 박찬홍 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는 훨씬 많다. 러시아 연방 통계서비스의 자료를 보면, 북한 노동자는  
2014년 30,700명이었고, 2015년 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sup>10</sup> 이애리아  
·이창호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10월 4일 북러 노동자 파견 MOU  
체결 시에 북한이 요구한 쿼터가 33,000명이었고, 한 계약서에서는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가 2013년에 32,858명이었다고 한  
다.<sup>11</sup>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 언론보도를 통해서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  
한 노동자가 2014년에 53,000명이었다고 주장한다.

〈표 Ⅲ-3〉 러시아 체류 북한 노동자 인원

연도	북한 노동자 인원
2011(3.30.)	32,000명
2012	45,000명
2014	53,000명

출처: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29 재인용.

<sup>8</sup>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도 9월 29일, 통일연구에서 면접.

<sup>9</sup>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서울: 예원기획, 2012), p. 57.

<sup>10</sup> 박찬홍, 『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p. 50.

<sup>11</sup>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29.

최영윤은 러시아 연방 통계청의 통계연감 및 고용·노동 통계를 이용해서 2015년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북한 노동자를 30,400명이라고 밝혔다.<sup>12</sup> 통일연구원에서 입수한 자료와 러시아 해외노동자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 인원은 최소 30,400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에 비해 부족하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탈북한 노동자들의 증언이 거의 없었고, 중국 현지 조사도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인원은 세종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추정치를 발표했다. 세종연구소는 2016년 조중 국경지역 현지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인원이 최소 7~8만 명 정도이고, 조만간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밝혔다. 단둥시 상주 북한 인력은 2016년 8월 현재 3만 명(무역상노동자 포함) 정도다. 엔지는 첨단기술개발구의 12개 기업에서 북한 IT 기술인력 1,380명을 신청했는데 2015년 1월 200명을, 2016년 1월 현재 312명을 채용했다. 훈춘시는 2016년 3월 25일 3,000명 정도를 채용했다. 투먼시는 조선투자합영위원회와 북한 노동자 2만 명 고용계약을 맺고, 투먼시에 북한 노동자를 유치할 조선공업원을 건설했다. 조선공업원은 2015년 6월에 북한 노동자를 2,680명 유치했고, 2016년 8월에 약 4,000명을 유치했다.<sup>13</sup> 중국 『봉황주간』의 보도에 따르면, 유일한 중조로무합작창구경제개발구인 투먼시 조선공업구가 2011년 길림성정부의 비준 하에 성립했고, 약 2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훈춘·도문·돈화연길 등에 북한과 길림성정부의 노무합작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sup>14</sup>

<sup>12</sup> 최영윤,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통계 데이터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호, pp. 108~109.

<sup>13</sup> 이종석,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경제 실상,” 『정책브리핑』, No. 2016-21 (2016.8.22.), pp. 8~10.

<sup>14</sup> 鐘堅, “朝鮮勞工探秘! 2萬勞工入境內情,” 『鳳凰周刊』, 2012년 17期.

〈표 III-4〉 중국 체류 북한 노동자 인원

도시	인원(명)
단둥	30,000
투먼	4,000(고용계약 20,000)
엔지	312(신청 1,380)
훈춘	3,000
계	37,312

출처: 이종석,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경제 실상,” pp. 8~10.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은 10만 명 정도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사가 11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가 2010년 54,000명에서 2013년 93,00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에 중국에 입국한 북한 사람은 92,000명이고, 이중에서 47.8%인 44,000명이 노동자라고 밝혔다.<sup>15</sup> 이는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 수는 총 188,300명이고, 그 중 파견 근무자수는 절반 정도인 94,200명으로 나타났다.<sup>16</sup> 이 파견근무 통계는 근무 기간과 형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해외노동자 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sup>17</sup>

통일연구원은 중국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회사 사장을 심층 면접했다. 이 피면접자는 요녕성에 6만 여명이 있고, 단둥에는 15,000~18,0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한다고 증언했다. 훈춘의 양복제조회사인 야결에는 북한 노동자 5천 명 정도가 필요한 데,

<sup>15</sup> 庄曉丹, “肩負賺取人民幣的使命, 中國朝鮮勞動者三年增幅近20%,” 『澎湃新聞』, 2014.11.12.

<sup>16</sup> 최영윤,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통계 데이터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호, p. 112.

<sup>17</sup> 위의 글.

현재 4천 명이 있고, 도문에도 2천 명이 일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북 3성 지역의 봉제회사에는 회사마다 북한 노동자를 최소 100명에서 보통 200~300명 정도를 고용했고, 많게는 800~1,000명씩 고용한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sup>18</sup>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세종연구소에서 제시한 7~8만 명 정도가 최소 인원일 것으로 추정된다.<sup>19</sup>

통일연구원 심층면접에서는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인원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쿠웨이트에 관리자로 파견되었던 탈북자는 쿠웨이트에 북한 노동자 약 5,500명이 근무한다고 증언했다. 이 탈북자는 쿠웨이트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 “우리 인원이 650명, 많으면 750~800명까지. 본사가. 그 당시에 우리(노동자)가 5,500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sup>20</sup> 이 탈북자의 증언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5,000명보다 500명이 더 많다.

<sup>18</sup> 북한이탈주민 신기영(가명), 2016년 4월 22일, 중국 현지에서 면접.

<sup>19</sup> 중국의 해외노동자 수는 추정치이고,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sup>20</sup> 북한이탈주민 조명택(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표 III-5〉 기존 자료와 인터뷰를 통한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인원

국가	인원	
	최소	최대
러시아	30,400	53,000
중국	70,000	80,000
몽골	1,300	2,000
쿠웨이트	5,000	5,500
아랍에미리트	2,000	2,000
카타르	1,800	1,800
앙골라	1,000	1,000
폴란드	400	500
말레이시아	300	300
오만	300	300
리비아	300	300
미얀마	200	200
나이지리아	200	200
알제리	200	200
적도기니	200	200
에티오피아	100	100
계	113,700	147,600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 인원은 한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 아산정책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연구원의 연구결과, 북한 해외노동자 인원은 113,700~147,600여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sup>21</sup> 물론 이 인원은 중국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된 인원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북한 해외노동자 인원을 정확하게 추정하려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인원 등에 대한 중국이나 북한의 공식문서를 입수하거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정밀한 추정치를 제시해야한다.

<sup>21</sup> 이 추정치는 각 국가의 정부 공식 통계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각 국가별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국에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원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 2. 해외노동자 파견 결정

북한이 해외에 노동력을 송출하는 목적은 외화벌이이다. 북한은 외화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시아·중국 등 40여 개 국가에 노동력을 송출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은 건설업·임업·봉제업·요식업·IT 분야 등에서 이루어진다. 2007년 당시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은 건설업·요식업·봉제업·임업 등이 주를 이뤘다. 건설인력 파견은 노동당 소속 수도건설총국과 류경건설총국, 내각 무역성 소속 대외건설관리국, 인민보안성 소속 남강건설사업소 등에서, 요식업 인력파견은 노동당 38호실 소속 고려봉사총국, 내각 체육지도위원회, 평양시 인민위원회 대외봉사총국 등에서, 봉제업은 당 경공업부 소속 봉화지도국, 당 39호실 산하 대성총국·낙원총국, 내각 경공업성 소속 은하지도국 등에서 담당했다.<sup>22</sup> 임업 인력은 임업성과 각 도 임업관리소를 통해서 주로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에 파견했다. 임업 분야 인력파견은 북한정부와 러시아정부 간 협약을 통해서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III-6〉 2007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기관

	당	군	내각
건설	수도건설총국 류경건설총국	-	무역성(대외건설관리국) 인민보안성(남강건설기업소)
요식업	38호실 (고려봉사총국)	-	체육지도위원회 평양시인민위원회 (대외봉사총국)
봉제업	경공업부(봉화지도국) 38호실(대성총국, 낙원총국)	-	경공업성(은하지도국)

<sup>22</sup> 조명철·김지연,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p. 3~5.

최근 해외노동자 파견기관이 크게 늘었다. 탈북한 건설 부문 해외노동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노동당은 39호실 산하 대성총국·낙원총국, 재정경제리부는 8건설사업소, 내각은 대외건설관리국, 무역성 산하 대외건설사업소, 수도건설위원회 산하 수도건설관리국, 각 성 산하 대외건설양성소, 군은 인민무력부 산하 25부, 공병국 1여단, 경비대 산하 7000국·8000국 등에서 해외노동자를 파견한다. 임업은 임업성 산하 각도 임업관리국에서 지속적으로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에 파견한다.<sup>23</sup>

〈표 III-7〉 2016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기관

	당	군	내각
건설	39호실(낙원총국) 재정경제리부	인민무력부 경비대	대외건설관리국 (모스크바 39건설) 무역성(문수, 룡라, 철산, 옥류, 5.16, 7.27) 수도건설위원회 (목란회사, 광복건설) 각 성
임업	-	-	임업성, 각도 임업관리국

\* 출처: 박찬홍, 『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p. 28 참조 작성.

해외노동자 파견결정은 노동당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해외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정절차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노동자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노동당이 상대국과 노동자 파견을 결정한 후 관련 부처에 파견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과 북한 무역회사가 상대국 기업과 노동자 파견을 합의한 후 노동당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 있다.

노동당이 상대국 정부와 협의해서 노동자 파견을 결정하는 방식은 노동당이 파견 분야와 인원을 결정하고, 관련 부처에 파견 국가와 인원

<sup>23</sup> 박찬홍, 『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p. 28.

을 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군·내각은 해외노동자 파견을 전담하는 산하 기관이나 무역회사를 통해서 해외노동자 파견을 실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 별목공 파견이다. 별목공 파견은 북한 당국과 러시아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업성과 각도 입업관리국에 파견 인원을 배정한다. 이는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똥다리스. 똥다라는 건 시 이름인데 그 시에서 입산 사업소라는 건데 똥다림사라고 러시아 립업부하고 북한 립업부하고 서로 체결해서 들어갔으니까네. [정부 대 정부 계약이네요?] 예. 정부 간.”<sup>24</sup>

“우리가 계약했다기보다도 나라, 나라 간에 계약한 거, 한 노동자 한 명 당 이만큼 일하면 얼마큼씩 준다하는 데는 제가 듣기로 우리한테 우리가 일해서 번 거에서 우리한테 차려지는 게 20프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sup>25</sup>

북한 무역회사가 상대국 기업과 노동자 파견을 합의한 후에 노동당의 승인을 받는 방식은 북한 무역회사와 상대국 기업이 해외노동자 파견 분야와 인원을 결정한다. 북한 무역회사와 거래하는 상대국 기업은 자국 정부에 북한 노동자 고용을 신청하고 인원을 배정 받은 후 비자를 발급 받는다. 북한 무역회사는 노동당의 승인을 받아서 상대국 기업에서 요청한 노동자들을 파견한다. 이는 탈북자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애매하죠. 정부와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대외건설 지도부가 한다고 봐야죠. 대외건설 지도국. 러시아 개인하고 대외건설 지도국에서 워크 다 내주니까. 대외건설 지도국하고 해가지고

<sup>24</sup> 북한이탈주민 나진구(가명), 2016년 10월 1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25</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학(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선. 지도국에서 보구서는 체결해가지고선 해당 대방이 러시아 서류를 해주죠. 해주고, 비자까지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노동자 받겠다 하는 경우 그 수속해주게 되면, 지도국에서 그 답에 (현지)에 회사를 하나 만들죠. 만들면. …현지회사하고 러시아 개인하고 거래하지요. 거래하는데, 현지 회사에 있는 놈이든지 아니면 러시아 대사관에서 어디든. 어쨌든 로어 아는 놈이 러시아 사람하고 체결하지요. 체결해서 지도국에다 나 이런거 체결했습니다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새끼는 치는 과정을 말하죠. 현지에서 돌아가다가 러시아 구락부나 돈 벌러간 놈을 하나 만났다 하는 경우, 이런거 자기네 체결. 북한사람은 우리 노동자들 사람 될 수 있으니까 너는 회사 워크 하나 해가지고선 우리 같이 좀 체결하자 하는 경우, 러시아 건설 회사가 하자 해가지고선 그 건설회사에서 각종 수속 있잖아요. 그 수속을 다 맡아 놓고. …(러시아 회사에서) 수속을 다 해주죠.”<sup>26</sup>

“나는 조선회사로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5년 비자로. 비자라는 게 없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이고 거기 러시아 실례로 러시아 사람이라면, 러시아 사람 내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북한에다가 요구한단 말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그러면 이 사람이 모스크바까지 다 나라 승인을 받아서, 외국에서 사람들여 오겠다고 그걸 나한테 준단말이에요. 북한에다가. 그러면 북한에서 러시아 그 사람 회사 이름을 달고 들어오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이 사람이 3년이면 3년 이렇게 비자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대체로 러시아 사람은 3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간 회사는 조선에서 이제처럼 러시아에서 요구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조선에서 칠보산이란 회사를 만들어서 러시아가서 세금내면서 일 하겠다고 이래서 들어간 회사이기 때문에 연한이 없었던 말이에요. 몇 년이라는 게.”<sup>27</sup>

<sup>26</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27</sup> 북한이탈주민 정경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북한 무역회사는 상대국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북한 노동자 고용인원을 늘리기도 한다. 아래 탈북자 증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쿠웨이트 기업에서 북한 노동자 100명을 요구하면 북한기업은 쿠웨이트 기업과의 비자계약을 할 때 파견 인원을 150명으로 늘린다. 북한은 이전에 쿠웨이트에 파견됐을 때 범죄경력으로 인해 쿠웨이트정부가 입국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서 파견 인원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5년 비자 살아있다면 그 회사에 계약이라는 게 대상이 큰 대상인가에 따라서 비자계약이 이뤄지는데 비자 계약 이뤄질 때 상대측이 아랍인이면 아랍회사하고 약속할 때 북한 노동자 100명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해가지고 150명을 받습니다. 비자받기 힘들니까 150명을 받아서 사람들 들어오는데, 내 비자가 살아있는데 내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죠. ...아랍 회사가 쿠웨이트정부 당국에 대상을 입찰 하잖아요. 입찰해서 경쟁자들 해서 예를 들어서 퍼스트쿠웨이트가 대상을 하나 입찰 받았다고 하면 총 공사규모 액수랑, 규모가 다 나오죠. 나오면 이거 노스코레아 노동자 150명, 자기네 기술 봉사들은 몇 명해서 총 몇 명으로 한다는 걸 정부에 제출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자기네 아랍인은 몇 명 쓰고 꼬레안은 몇 명 쓴다고 해서 정부에다가 제출한단 말입니다. 쿠웨이트 노동국에 제출하면 노동국에서 비자승인을 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본사에서 정부 대상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노동자를 받으려면 쿠웨이트 노동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사 노동부에서 쿠웨이트 노동국에 신청을 해서 노동국에서 도장을 쳐주면 100명, 150명 이렇게 명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부승인 받았으니까 너희 이제 150명 빨리 들여오라. 비자 자료 들여오라.’ 평양에다가 팩스 보낸단 말입니다. 여권 자료 들여보내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다가 들이밀고, 정부에서는 보고 이 사람들이 이미 전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확인해서 없다고 하면 도장 해주

면 비자 승인이 됐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비자 승인 됐다. 누구는 정부에서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됐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내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명 수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꾸면 일단 머릿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비자 기간은 줄어들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 다시 비자 연기하고 처리하죠. …쿠웨이트도 역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100% 일용직이에요. 한 시간에 1원 공통이라고 다. 한 시간에 1K.D.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그렇게 안 하고 물량으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한 동 짓는데 콘크리트가 천 몇 루베, 1만 루베가 들어간다면, 1루베 당 가격을 부르죠.”<sup>28</sup>

중국의 경우 2016년 상반기까지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기업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정부의 묵인 하에 노동자 파견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3성의 경우 중국기업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각 지방 공안에 북한 노동자 인원을 등록한다. 중국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 인원은 중국기업, 각 지방 공안, 출입국 관리국, 변방대 등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중국 지방정부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기업에게 북한 노동자 1인당 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북한 노동자 300명을 고용하면 중국 지방정부는 중국기업에 30만원을 지급한다.

“우린 정식 허가는 없어요. [그럼 중국정부는 모르는 거예요? 보고는 안 한 거예요?] 아는데 다 숨겨서 넘었지. [그럼 중국 측에 기록은 없겠네요? 이 사람들은 중국 측 입장에서는.] 아니 파출소, 지방, 우리 공장 그 지역 있잖아요. 공장 그 어떻게 말해야 되요. [관할 파출소?] 네 관할 파출소. [파출소에 등록

<sup>28</sup> 북한이탈주민 조명택(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돼 있다? 그러니까 300명이 여기 와서 일 한다 이건 등록이 돼있고, 그 답에 OO시정부나 이런 데는 아예 서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모르죠. 공식 서류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건 파출소만 파악하고 있는 거네요?] 네 파출소,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 출입국관리?] 예, 거기 알고, ...변방대. 거기는 알죠. [그러니까 파출소, 출입국 관리하는 곳 나왔다 들어갔다,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 변방대 정도는 알고 있다. 이 세 군데는?] 예. ...무역하는 회사, 그러니까 중국 회사하고 북한 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300명 달라, 500명 달라 하면, 중국정부에서 중국 회사한테 1인당 천원 줘요. 1인당 천원. 300명 들어오면 뭐 한 번에 30만 그래 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소개비를 받는 거구나?] 네. 소개비죠. [그리고 북한 쪽 노동자하고 직접 1:1 계약 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회사하고 하는 거죠. [문서로 하는 거예요?] 문서. [문서로, 거기에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1인당 얼마 쓰고, 보통 우리는 휴가는 어떻게 주고, 정확하게 제가 계약서는 못 봤는데, 뭐 그 몇 개 부분만 들어간 거 같아요. 음 인건비 어짜 주고. [계약서에 정규 근로시간도 써 있어요?] 우리는 계약서에 있을 거예요. 8시간으로. [그럼 10시간을 하면 돈을 따로 주는 거예요?] 아니죠. 계약서만, 북한정부에다 보여 줄라고 그래하는. [휴가 뭐 이런 것도 써 있는 거예요?] 예 일요일 쉬는 걸로. ...그리고 명절마다 쉬는 걸로.”<sup>29</sup>

### 3. 계약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계약은 북한 무역회사와 해당 국가의 기업이 체결한다.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진이 중국 현지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sup>29</sup> 북한이탈주민 신기영(가명), 2016년 10월 6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피복생산 노동자 채용계약서에 잘 나타난다. 계약서는 제1조 계약당사자, 제2조 계약목적과 대상·계약기간, 제3조 쌍방의 의무와 권리, 제4조 노력비·생활비 적용 및 지불, 노동정량문제, 제5조 계약의 준수와 파기의 책임과 보장, 제6조 불가항력, 제7조 분쟁해결, 제8조 계약작성언어, 수정 및 보충, 해석 등 총 8조로 구성된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1~5조로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 당사자는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 △△공사의 법인대표다. 북한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중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계약 당사자는 해외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북한 무역회사였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같이 북한 당국이 계약 당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2조는 계약목적과 대상·계약기간을 규정한다. 계약목적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중국현지피복공장에 ○○무역회사에서 파견하는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계약기간은 3년이고, 쌍방이 협의하여 더 연장하거나 기한 전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북한 ○○무역회사는 계약기간에 400명의 관리 및 피복기술자와 기능공들을 1차적으로 선발파견하고, 생산능력확장에 따라 북한의 해당부문의 승인을 거쳐 430~500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추가 파견할 수 있다. 북한은 계약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원을 미리 확보하고, 중국 기업에서 노동자 추가파견을 요구하면 곧바로 파견했다.

제3조는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다. 북한 ○○무역회사의 중요한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장 1명, 관리 성원 4명, 18~25세를 기본으로 하고 45세까지의 건강하고 6개월 이상의 피복가공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을 단계별로 중국 ○○성 ○○국경까지 이동시킨다. 둘째,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의 현행법과 질서, 공장내부질서와 로동안전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셋째, 생산제품의 품질과 수량, 납기를 보장하고, △△공사의 기술지도와 요구, 규범을 존중하고



기술성원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성실히 협조·실행해야한다. 넷째, 쌍방이 합의한 국가 명절, 민속명절을 포함해서 월 2회 휴식한다. 다섯째, 만기출국성원들의 수속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출국 1개월 전에 △△공사에 서면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중국 △△공사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회사의 노동자들은 중국 공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한다. 둘째, ○○무역회사 인원들의 생명안전을 담보하며 생명안전에 필요한 안전필수품과 첫 입국성원들에 대한 1차 생활필수품을 제공한다. 셋째, ○○무역회사 노동자들이 연 1회씩 공무국경통행증 교부로 조선에 귀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제기되는 위생통과증문제와 출입국시 왕복수송을 보장한다. 넷째, ○○무역회사 노동자들이 시정할 수 있는 TV, 주택과 편리한 사업조건(사무기기와 비품), 위생적 생활환경과 노동조건, 계절별 노동복과 신발, 의외상해보험 등을 보장한다. 다섯째, 주문 작업량이 적거나 일감이 없어 생산을 못하는 경우 △△공사는 ○○무역회사 노동자들에게 매월 1인당 1,800위안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2개월 이상 문제가 지속되면 쌍방이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한다.

제4조는 노력비·생활비 적용 및 지불, 노동정량문제를 규정한다. 노력비는 1인당 매월 1,800~2,000위안이다. 노력비와 생활비 계산은 매달 5일까지 지불하고, 관리성원의 생활비는 1인당 3,500위안이다. 노력비 적용 및 지불문제는 쌍방이 협의하여 년 1~2회씩 조정한다. 노동정량은 8시간, 노동시간의 생산량을 정하고, △△공사는 노동정량을 정한 후 제품생산에 위한 조건보장이 되지 않아 ○○무역회사가 정량생산을 미달하는 경우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5조 계약의 준수와 파기의 책임과 보장은 계약기일 만기 2~3개월 전에 호상 해약통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3년씩 연기된다.



- 여 호상 경제적리익을 얻자는데 목적을 둔다.
2. 본계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협작투자기업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작법의 해당조항에 준하여 작성되었으며 쌍방은 계약서의 조항요구에 부합되게 생산경영활동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책임적으로 노력한다.
  3.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쌍방의 의사에 따라 경제적리익을 창출하면 기간을 (더) 연기할수 있으며 계약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쌍방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제적손실을 볼때에는 기한전이라도 협의하여 계약을 해약할수 있다.
  4. ○○은 계약기간에 400명의 관리및피복기술자, 기능공들을 1차적으로 선발파(견)하며 생산능력확장에 따라 430~500명까지의 인원을 조선의 해당부문의 승인(을)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보장할수있다.

### 제3조 쌍방의 의무와 권리

- 1) <○○>의 의무와 권리
  - △△의 초청에 따라 ○○은 사장 1명을 포함한 관리성원 4명과 18~25살까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45살까지의 건강하고 6개월 이상의 피복가공경험을 소유한 기능공들을 단계별로 중화인민공화국 ○○성 ○○국경까지 파견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현행법과 질서, 공장내부질서와 로동안전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생산제품의 품질과 수량, 납기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의 기술지도와 요구, 규범을 존중하고 기술성원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성실히 협조, 실행하도록 한다.
  - 쌍방이 합의한 국가적명절, 민속명절을 포함하여 월 2차 휴식한다.
  - 관리성원및로력자들이 합법적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문건을 제출하도록 한다.
  - 만기출국성원들의 수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출국 1개월 전에 △△에 서면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lt;△△&gt;의 의무와 권리

- ○○의 모든 성원들을 주재국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한다.
- ○○인원들의 합법적 취업과 거주를 담보, 보장하며 중국에서의 일체수속을 맡아 보장한다.
- ○○인원들의 생명안전을 담보하며 생명안전에 필요한 안전필수품과 첫입국성원들에 대한 1차 생활필수품을 제공한다.
- ○○의 로력자들이 년에 1차씩 공무국경통행증교부로 조선에 귀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데 맞게 중국에서 제기되는 위생통과 증문제와 출, 입국시 왕복수송을 맡아 보장한다.
- ○○로력성원들이 시청할수 있도록 TV와 TV 조선통로를 보장한다.
- ○○관리성원들에 대한 주택과 편리한 사업조건(사무실, 비품, 통신보장, 사무용컴퓨터, 인쇄기 등)을 보장하여준다.
- ○○로력성원들의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안전한 노동작업조건을 최상으로 보장한다.
- 노동보호물자와 년에 △△마크가 있는 계절별로 동복 2벌(여름, 겨울), 작업신 2켤레와 전체성원에 한하여 의외상해보험을 보장한다.
- ○○로력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담화를 하거나 지시를 줄수 없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관리성원들을 통하여 해결한다. (기술지도 제외)
- 주문작업량이 적거나 일감이 없어 생산을 못하는 경우 △△는 ○○전체성원에 한하여 월에 매인당 1,800 원씩 생활비를 제공하며 2개월이상 문제가 지속되면 쌍방이 협의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제4조 로력비, 생활비 적용 및 지불, 노동정량문제**

## 1) 로력비, 생활비 적용 및 지불

- △△는 ○○인원들이 현지에 도착한때로부터 로력비를 지불한다.

- 로력비는 전체성원에 한하여 1 인당 매월 1,800~2,000원으로 정한다.
- 로력비와 생활비계산은 매달 5일까지 지불완료한다. 관리성원 3 명의 생활비는 1인당 3,500원으로 한다.
- 로력비 적용 및 지불문제는 쌍방이 협의하여 년에 1~2차씩 조정한다.

## 2) 로동정량문제

- 로동정량은 8시간 로동시간의 생산량을 정하며 쌍방이 인정한 기술준비성원들 ○○기능공들의 기능수준과 해당제품생산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히 정(하)며 제기되는 의견들은 쌍방 관리성원들과 실무성원들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 △△는 로동정량을 제정한후 제품생산을 위한 조건보장(해당할 설비보장, 부자재 공급 지연 등)이 되지 않아 ○○이 정량생산을 미달하는경우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
- △△는 ○○생산자들이 제품생산외에 다른 타사업에 동원되지 않도록 조건보장을 철저히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타사업으로 정량생산에 참가못한 경우 해당하는 로력비를 계산하여 지불한다.

## 제5조 계약의 준수와 파기의 책임과 보장

- 계약은 조중국가간의 법적효력을 지니며 계약리행이 곧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신뢰이며 신용이다.
- 계약은 3자에게 양도, 매각할수 없고 계약내용과 리행과정에 대한 사업비밀을 루설할 수 없다.
- 계약의 해약은 어느일방이 계약조건을 불리행하는 경우에도 진행할수있으며 리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은 호상 존중과 양보로 평등하게 협상하여 친선적으로 해결한다.
- 계약기일 만기 2~3개월 전에 호상 해약통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3년씩 연기된다.

**제6조 불가항력**

- 화재,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나 국가적인 귀국조치, 전쟁 등의 불가항력의 요인의 영향을 받아 계약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리행할수 없는 경우 쌍방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불가항력조건이 해제되면 계약을 계속 리행한다.
- 불가항력조건이 발생하면 15일내에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분쟁해결**

본계약의 리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은 호상 존중의 원칙, 양보와 아량으로 평등하게 협상하며 친선적으로 해결한다.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쌍방이 인정하는 책임있는 중재기관의 중재판결로 해결한다.

**제8조 계약작성언어, 수정및보충, 해석**

- 본 계약은 조선어 2부로 작성되어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지며 쌍방의 법인대표들의 확인수표후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계약리행과정에 제기되는 수정 및 보충내용은 본계약서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계약의 한부분으로 된다.

조선○○○○회사  
사장 ○○○ 수표

중국△△△△△△△△공사  
경리 △△△ 수표

조선○○○○총회사 중국○○○○○○○○○○○○○○○  
사장 ○○○ 수표

출처: 통일연구원 중국 현지조사에서 입수.

북한 노동자들은 파견국 기업과 개인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 해외노동자 출신 탈북자들은 파견국 기업과 근로계약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북한 당국은 통일연구원이 중국 현지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계약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파견국 기업들과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고 북한 당국은 북한 노동자들과 개별적으로 파견계약을 맺지도 않았다. 북한 당국은 파견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지배인과 관리자들을 파견해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파견국 기업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수령해서 노동자 개인에게 임금의 10% 정도만 지급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sup>30</sup>

“그렇지요. 3년. 계약서를 그저 다 써 있어요. 3년 일하고 왔다는 거. 그거 수표만 하면 돼요. 읽어보라. [러시아에 가서, 어떤 조건에서 일한다는? 월급은 얼마 받는 다 이런 거?] 아이 그런 건 없어요. 월급은 자기 한 건 만큼. …그런 계약서는 나는 생각 안나요. 저는 생각 안 납니다. 인센티브. 얼마나 과업을 수행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따르지요. 내 월마다 고지가 나오지요. [별도에 계약서는 러시아 쪽에 나가서 며칠 일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월급은 얼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안 나와요. 휴식이 뭐 그런 거 명절날 따로 없고, 오직 근무. 계획량이 있어요 월마다. 계획량에 따라 계획량 10프로 하게 되면, 한 달에 컬러 티비 3대 값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요. 초과하게 되면, 거기에 누진이 또 붙어요. 조금만 초과 들어가게 되면 누진이 또 상당히 붙어요. 그거 계획하기 힘들지만, 누진 붙는다면 사람들이 눈이 미칠 지경이죠. 더 많이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니까.”<sup>31</sup>

<sup>30</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31</sup>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 9월 28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근로계약서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sup>32</sup>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침부터 무슨 몇 시부터 나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그게 노동시간이고. 그게 정해진 시간이고. 시간은 정해져 있지 몇 시부터 준비 작업하고 몇 시하고 그거 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거 간부들이 시키는 대로 그저.”<sup>33</sup>

“근로계약서 없어요. 내 한국사람, 그 근로계약서 개인이 쓰지 않아요. 우린. 그 회사가 다 쓰면서 그 회사에서 하고. ...회사에서 쓰는 내용은 통역들하고 좀 가까이 하니까 개네들 그 사람들이 작성하는 거는 대충 몇 번 봤어요. ...그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근로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 시킨다 이 따위는 없어요. 그런 건 난 못 봤어요.”<sup>34</sup>

“그런 건 없었어요. 그저 작성이라는 거 보다는 가서 규율을 잘 지키겠다, 내가 그러니까 조직적인 규율을 잘 지키겠다는 걸 선서를 했거든요? 들어갈 때. [말로 선서를 하셨어요?] 네, 말로.”<sup>35</sup>

“근로계약서라는 거는 없어요. ...그저 얼마 바쳐야 된다 하는 거밖에 당 계획분만 불러주지 다른 거는 없어요.”<sup>36</sup>

대부분의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해외 작업장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이 어느 국가로 파견되는지만 알려줬고, 파견 기간, 파견 지역, 계약

<sup>32</sup> 북한이탈주민 김홍민(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33</sup> 북한이탈주민 현대준(가명), 2016년 10월 4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34</sup> 북한이탈주민 나인현(가명), 2016년 10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35</sup> 북한이탈주민 신강섭(가명), 2016년 10월 6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36</sup> 북한이탈주민 이종우(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조건, 임금 등을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뭐 무슨 지역에 가서, 무슨 건물  
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설한다 이리저리고, 그냥 러시아 발  
표난다, 리비아 발표난다 이러면 발표자 명단 불러준다 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명단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자세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일은 어떤 거 하고.  
뭐 임금은 얼마고 이런건 안 알려줘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도?] 그런 건 안 알려줘요.”<sup>37</sup>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sup>38</sup>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뭐 그래요. 당 자금, 당신네 우리 돈 벌  
러 가는 게 아니고 나라 돈 벌러 간다는 소리를 해요. 저래 다  
그렇게 말해요. 이를테면 당 자금 때문에 가는 거고, 그 답에  
물론 가족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선 첫째로 당, 당 자금을 신  
경을 써야 되고 그거를 첫 자리에 놔야 된다. … [구체적인 근  
로 조건은]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니까 작업복 거기서 대충  
준비하라 그러고.”<sup>39</sup>

“공인들한테 직접 설명한 거 아니에요. …지배인한테. [그럼  
지배인이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죠?] 네.”<sup>40</sup>

“그런 건 못 들었습니다. …그저 밥은 거기서 다 주고, 작업복  
도 갈 때 거기서 다 주고, 아니 작업복은 우리가 가지고 가고.  
…듣고 가는 건 그저 가서 거기서 일하고 별목 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산 밑에서 일할 수도

<sup>37</sup> 북한이탈주민 최순우(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38</sup> 북한이탈주민 현대준(가명), 2016년 10월 4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39</sup> 북한이탈주민 나인현(가명), 2016년 10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40</sup> 북한이탈주민 신기영(가명), 2016년 10월 6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있고, 그것은 이제 가서 보면 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갔었어요. [그것은 누가 얘기해준 건가요?] 우리 그 노동처에서. 다 모집해가지고 선전실 같은데 회의실에서 다 앉혀 놓고 '자 이번에 몇 명 들어가는데...' 거기서 함복도면 함복도 몇 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모다 가지고 하루 모다 놓고 강의를 해 줘요.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고 갈 때는 무슨 걸 준비하고 그거 다 얘길 해주고, 일단 들어가서는 산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도 있고 조재에서 일하는 사람, 자르는 사람도 있고."<sup>41</sup>

"그건 모르죠. 그저 소련간다. 나무하러, 배려 간다 그렇게 그게 다죠. 어느 지역간다 그건 모르죠. [혹시 몇 시간 일할 거고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일한다는 건?] 그건 모르죠. 기약이라는 게 없죠. 북한 노동자들 해외 나가면 기약이라는 게 없어."<sup>42</sup>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파견을 나가 쿠웨이트에 가게 되면 돈을 얼마를 주고 몇 시간 일을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알려주는 건. ...우리가 한 개 작업반이 50명이니까 50명에서 우리 납부 계획 있잖아요? 자기네가 납부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얼마 벌어야 납부하고 나머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차려지는지 자기네가 계산한단 말이야. 가장 편안한 게 공개시켜주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면 자기네가 벌써 '아 우리가 하루에 얼마 벌어야 된다, 그래야 차려지는 뭇이 얼마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공개하는 단위도 있고 안 하고 하는 단위도 있고. 단위마다 달라요. ...내가 들어와서 계약금액을 공개시켜놓고. 맨 처음에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계약금액은 원래 비밀이 원칙이에요. [당국 강습을 받을 때도 비밀로 하라고 교육을 받나요?] 네, 이걸 비밀이란 말이에요. 액상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얼마 정부에 납부한다, 얼마 벌어서 어떻게 된다는 게 사람이라는 게 거기 몇 천 명이 나와 있는데, 그 몇 천 명이 아랍인 누구라든가 얘기하다가 이게 노출되면 뭐라고

<sup>41</sup> 북한이탈주민 신강섭(가명), 2016년 10월 6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42</sup> 북한이탈주민 민다혁(가명), 2016년 10월 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하나. 나라 위신, 북한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신경 쓰는데 ‘철저하게 계약금액 비밀로 하라, 납부액수도 비밀이다’라고 무조건 눌러 놓는다 말이야. 난 공개시켜놓으니까 몇 번 말 들었다고. ‘계약단가 왜 공개시키냐, 노동자들한테’,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내가 계획분만 정확히 들여다 놓으면 되지 않나? 상관없지 않나. 계획분만 노출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내가 몇 번 싸움했다고.”<sup>43</sup>

“전혀 몰랐습니다. …소문으로는 약간의 뭐 어느 쪽에 가야 돈 잘 번다 그런 거나 알지만. …배치지는 모르고요.”<sup>44</sup>

“이미 갔다 온 사람 통해서 어디를 가면 더 낫고, 어디로 가면 어떻고. 이런걸 다 자기가 자체로 정보를 수집하니까요.”<sup>45</sup>

“예매표가 당신들이 번 액수만큼 가족들한테 예매로 들어온다. [금액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런 건 알려주지도 않아요. 일한만큼 예매표가 가족들한테 가서 예매표에 의한 구매가 가능하다. 생활은 개선될 것이다 하는 정도.”<sup>46</sup>

“그런 정보는 노동자들한테 말도 안 해주고 들어가서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일하면 하고 별기 싫으면 안 하고 그제.”<sup>47</sup>

“그런 거 다 말해주죠. 러시아국경연선에 가게 되면, 러시아로 넘어가기 직전에 큰 모집하는 그런 여관이 있어요. 거기다 모여 놓고, 들어갈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설명해요.”<sup>48</sup>

<sup>43</sup> 북한이탈주민 조명택(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44</sup> 북한이탈주민 나진구(가명), 2016년 10월 1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45</sup> 북한이탈주민 정경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46</sup> 북한이탈주민 김강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47</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화(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48</sup>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 9월 28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 IV.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실태



## 1. 직업선택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에 참여한 북한 역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선택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파견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근본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뇌물 공여를 통해 좀 더 유리한 파견지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청원하는 길 외에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사실상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북한의 경제상황 때문에 해외파견 노동은 돈을 벌 수 있는 흔치않은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으며, 당성과 성분이 확인된 소수의 주민들에게만 선발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발 과정 자체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해외파견에 대한 공고 자체가 없으며, 파견 나온 노동자들은 대개 개인적인 연줄을 통해 정보를 얻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파견에 대한 국가 공고를 접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거의 모든 답변이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주의는 해외파견 정보 자체가 일종의 자산으로 취급되는 상태를 만들며, 이는 다시 뇌물을 써서 해외파견을 나오게 되는 구조로 이어진다. 이는 해외파견을 경험한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북한이라는 게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당 기관으로 해서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서 내리 먹는 그런 국가지. 일반인 한국 사람들이 상식처럼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무슨 공고. 북한사람들은 그딴 공고라는 것도 모르고.”<sup>49</sup>

“공고를 본 게 아니고, 그걸 전달받았습니다. 구두로. 공고도 도노동국에서 봤어요. [공지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해외파견 지도원이 있어요. 전문. 그 사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sup>50</sup>

“그런 건 없어요. …해당 단위 당위원회에서. 당이라고 알지요? 당위원회 그거 내려와 명단이 이번에는 소련에 몇 명 가고 쿠웨이트에 몇 명 가고 독일에 몇 명. 그런 명단이 내려오는 거 있어요. 당위원회에서 사람을 뽑고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한테 잘 보인 사람. …물어보고 가겠다면 추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서도 그 사람에 대한 그거 있어야 되거든요. [아, 좀 뇌물을 좀 가지고 와서?] 예.”<sup>51</sup>

“그런 거 없어요. 비…그니까 이를테면 그것도 비공개, 어쨌든 소문으로 돌지, …따로 공고는 없어요. 아는 사람들 소문으로 이케 알고, 아는 사람들 선 타고 다 하지, 이 무슨 공고 나고, 여기 한국처럼 뭐 공시 일자리 정보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sup>52</sup>

“아뇨 모집공고는 안됐죠. …내적으로 도당간부가 이번에 소련 가는사람 모집한다고 그런데 그 모집한 도당간부와 아주머니가 내 잘안단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차운데 살았던 말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소련 가겠는가? 집에서 놀면 뭘하겠는가 소련이라도 가겠는가 그래서 가겠다 해서 그 아주머니가 말해줬다. 그사람이 함북도인데 요번에 함북도에서 두 명 갔는데 그사람이 다 이거 한단 말입니다. [그 아주머니 신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도당간부요?] 그 사람 와이프? 그 간부지

<sup>49</sup> 북한이탈주민 김창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50</sup>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 9월 28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51</sup> 북한이탈주민 현태준(가명), 2016년 10월 4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52</sup> 북한이탈주민 나인현(가명), 2016년 10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도원. …다 그렇게 선을 해서 들어오는 거지. 모집광고는 없어요. 해외노동 간다고 모집광고는 안내요.”<sup>53</sup>

“대체로 알려 안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저 해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실지로 알아보고 그래서.”<sup>54</sup>

개인적 인맥과 뇌물, 그리고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해외파견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로 파견될지 미리 알 수는 없다. 증언에 따르면, 해외파견을 신청한 노동자들은 파견이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느 국가로 파견나갈 지에 대한 정보에 철저히 접근이 배제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노동선택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파견가시기 전에 어느 국가로 갈지에 대해서 까지는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걸 정확히 모르죠. 중앙당발표가, 마지막문건이 다 올라와서 최소한 우리 위원회 그 중앙당 행정문건에 올라가기 전에는 수도건설위원회가 그 상급기관이니까 거기 당위원회까지 문건 올라갈 때까지는 귀뜸 좀 아는 사람들이 좀 귀뜸해주고, 간부들이 너는 어디간다 알려주고, 그 외에는 중앙당 발표가 뚝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중앙정부에서 너 어느 나라 가라고 찍기 전에는 그 다음에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예를 들어 러시아다 그러면 러시아는 작업시간이 길고 일강도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좀 늦게까지 일하고 서래 날씨가 더 춥고 그런 건 대주고, 주택건설을 많이 한다. 산업건설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귀소문 듣고서는 더 구체적이건는 모르죠.”<sup>55</sup>

<sup>53</sup> 북한이탈주민 민다혁(가명), 2016년 10월 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54</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화(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55</sup> 북한이탈주민 이종우(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그건 모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도 모르시는 건가요?] 네 그건 맨 첨엔 몰라요. [원래 얼마 받기로 계약되어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정보는 북한 측에서 전혀 제공 안 해주나요?] 네, 그런 건 없어요.”<sup>56</sup>

해외파견의 기회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성과 사상, 그리고 토대 같은 것들이 검토되고 그 중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이들만 해외로 나갈 기회를 얻는다. 이는 결국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다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해외파견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할린과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들의 실상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sup>57</sup> 이 조건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어를 못하고 6촌 이내 정치범 경제사범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여기서 러시아어를 못해야 한다는 조건은 북한 노동자들의 탈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출국 5년간 정치 행사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최근 5년간 거주지 생활을 확인해서 문제 여부를 조사한다. 넷째, 기술 자격증 및 신체검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파견 노동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파견 조건의 내용은 통일연구원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해외 나가려면, 전문 해외건설 사업소가 따로 있어요. ...그 사업소에 적어도 2년을 일하면서 사상검증, 육체검증, 기술검증 다 받아야 이 새끼 나가서 도망갈 놈이 아니다 제대로 일할 놈이다 인정되는 경우 나가요. ...2년 동안 일하면서 돈도

<sup>56</sup> 북한이탈주민 김석영(가명), 2016년 10월 1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57</sup> 이애리아,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 실태,” (도쿄, 일본: 통일연구원·와세다대·리츠메이칸대·서울대 공동주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에서의 노동력이동: 해외파견북한노동자 사례’ 발표문, 2017).

못 받지만 해외 나가자는 목적 하나 가지고 받치는 것이나 같죠. 육체를 받치거나, 돈도 못 받는데 험한 일이란 험한 일은 다 끌고 다니니. 그 사업소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우선 사상적으로 검증된 사람인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인가. 달아날 놈인가 달아날 놈이 아닌가. 그런거 검증하면서 2년 동안 하고.”<sup>58</sup>

“간부 과에서, 당 조직에서 이사람 이제 해외 나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간부사업이라는 거 하는데. ... 간부사업이라는게 매 기업소마다 간부 지도원이 있는데, 간부 과장이 있고 지도원이 있는데, 당위원회 산하에 이 사람이 그 다음서부터 가족관계, 그담에 토대로부터 시작해서, 경력을 다 캐지요. 불순한 행동 한 게 없는가, 교화소 출소자는 아닌가, 군사복무 했다면 군복무 충실히 했는가. 장군님한테 충실하게 따라왔는가 하는 거. 다 검열해야 되고. 교화 무슨 범죄 전적이 없는가.”<sup>59</sup>

“해외파견 규정이. 저 있을 때 규정으로 하면, 엄청 까다로웠다는거. 본인의 6촌까지 봤고 경제범이라는 건 일반 생계형 범죄. 도둑질 하든. 강간을 하든. 방화를 하든. 정치범, 경제범 그다음에 해외연고자. 해외연고자라는 거는 외국에 친인척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 미해명자 당연히 없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없어야 되요.”<sup>60</sup>

“대외건설기업소가. 95%가 다 90%가 당원이고. 10%가 사로 총 내지 근로자동맹 뭐 이런 직맹이지요. 그런사람들이. ...당원중에도 가반은 제대군인이고 ...처가 4촌까지 봤고. ...정치범, 경제범.”<sup>61</sup>

<sup>58</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59</sup> 위의 면접.

<sup>60</sup> 북한이탈주민 최순우(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61</sup> 위의 면접.

이처럼 단순히 좋은 배경 혹은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여러 단계에 거쳐 보증을 받은 후에야 파견을 나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순 노동자의 경우 5명 정도의 보증이 필요하나, 간부급은 15명 이상의 보증을 받는다고 한다.

“보증을 서는데 보증을 한 다섯 개 이상 보증 받습니다. 첫째로 세포에서 세포비서 당원들이 나에 대한 동향이 좋다 이런 세포보증서 하나 서야 되고, 그다음에 담당 보안원, 담당보안원이 법질서 잘지켰다고 이런 보증을 서야 되고, 그다음에 담당 보위원. 담당보위원 보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 인민반, 인민반에서 보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민반에서 어떻게 생활 잘했다는 보증.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인가 보증이 서야 보내주죠. 그거 다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찾아가서 생활 다른 거 없었다는 거. 그렇게 문건을 초안을 제출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야...내 문건 사본이라는 게 있지요. 내 이력부터 시작해서, 내 어디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고, 언제 어느 학교 다녔고 그다음에 친척 가계 쪽 쓰죠.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삼촌, 당삼촌 누구, 외삼촌 누구 쪽 써서 그 문건을 써가지고 그 당비서 전화번호까지 적으라고 해요. ...유급당일꾼이라고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당일꾼하게 되면 신용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작은 부문 당비서들도 못가집니다. 당원이 백오십명 이상 되는 유급당일꾼은 신용장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신원조회를 돌아가면서 의례 하게 되어있어요. 현지시찰하게 되었는데 북한이라는게 기차도 제대로 안서고 한번 함북도 갔다 올려고 하면 열흘, 보름도 있어야하는데 평양에서 갔다오는거 한 열흘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지 확인을 할 조건이 못되니까 당비서들 전화번호를 알아오라. 그래가지고 당비서 전화번호 제가 앉아서 알아보자니까 이사람은 우리 삼촌이 다른거 없는가 생활도 잘 하고...”<sup>62</sup>

<sup>62</sup> 북한이탈주민 이종우(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노동자들은 한 대여섯명 수표면 나가는데 우리는 한 15명 정도 받아야 돼. 그런 거 있지. 본인이 수표한다는 건 작성하는 건, 가족 및 친척관계나 작성하고 그 다음엔 없어요. 간부과에서 담당지도원이 다니면서 다 뒷조사하죠. 걸리는 거 없는가, 탈북한 게 없는가, 행방불명자가 없는가, 교화갔다온 사람이 없는가,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다 료해해가지고 만약에 뭐 있다고 하면 ‘너 집안에 누구 교화 갔더라?’ 또는 ‘갔다 왔더라?’ 하면 또 한 장 줘야 되고. …100달러. 그러면 그것도 삭감시켜서 없애버리고. …우선 당 세포, 부문당, 초급당, 간부지도원, 간부과장, 지도국에 넘어가서 지도간부 지도원, 간부과 부부장, 부장, 조직비서, 그 다음에 책임비서 대외건설 지도국에서 그 다음에 넘어오면, 대외건설지도국이 행정부 산하였으니까 행정부 간부지도원, 행정부 간부과장, 그 다음에 간부과로 넘어오면 간부과 지도원, 부과장, 간부과 과장. 이 사람들 도장 다 받아야 돼요. 순수한 당선으로만. 인민반장 도장 이런 거는 뭐 가서 얘기하면 다 도장 찍어주고 하는 건데.”<sup>63</sup>

하지만 실제에 있어 정치적 검증보다 해외파견 자격에 더 중요한 것은 뇌물 공여이다. 대부분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파견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의 뇌물 없이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증언을 했다. 가족이나 본인의 범죄경력 등으로 해외파견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뇌물을 통해 서류를 조작하여 해외파견을 나올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90년대 초반에 아버님께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때문에 그것도 다 문건 고쳤죠. 아버지가 교화갔다는 걸 다 고치고.”<sup>64</sup>

<sup>63</sup> 북한이탈주민 조명택(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64</sup> 북한이탈주민 김홍민(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뇌물만 바치면 범죄경력 문건도 위조해서 아예 깨끗하게 만 들어가고?] 예. 그래서 평범한 건 다 그렇게 해요. 높이 올라 간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하면 아이 되지만 왔다갔다하고 국내에서 조금 조동되는 건.”<sup>65</sup>

“그게 기준이 있지만 또 기준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뇌물을 잘 고이는 사람은 한 1년 되도 내 보내고,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좀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뭐 학습도 될 참가하고, 일도 지각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이 있으면 한 4~5년이 되도 안내보는 사람도 있고.”<sup>66</sup>

“실제론 징표가 대외건설사업소라고 그런 데 들어가지 않으면 못 가게 돼있는데, 그런 인맥 관계로 직통 그저 문건 쓰면서 저래 갈 수 있어요. 그게 돈의 힘이죠.”<sup>67</sup>

“3년 동안 결심을 해서 해외에 나왔다. 그를 위해 직장도 해외 나가는 기업소로 옮기고 1000불 정도를 투자해서 겨우 빠져 나왔다.”<sup>68</sup>

“뇌물을 내고 들어갔다. 우선 대외건설 입직하게 되면 언젠가는 해외에 나갈 수 있다.”<sup>69</sup>

북한의 배급경제 시스템에 무너지면서 시장경제가 상당 정도 도입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물주’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개인들이 개인적 부를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뇌물 공여가 토대와 배경에 따른 차별의 우회 통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북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sup>65</sup> 북한이탈주민 현대준(가명), 2016년 10월 4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66</sup> 북한이탈주민 최순우(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67</sup> 북한이탈주민 김홍민(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68</sup> NKHR2014000112 2014-08-12.

<sup>69</sup> NKHR2015000145 2015-10-06.

있는 것이다. 이는 일견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가족 배경이 개인의 직장 및 출세 정도를 결정하는 북한 특유의 차별 시스템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형해화되었다고는 해도 공식적인 차별의 통로가 존재하는 이상, 개인의 경제력이 부정부패를 이용하여 직업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직업 선택권에 대한 침해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좋은 경력과 배경이 해외파견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군사기밀 등의 고급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정보 누출을 염려해서 해외파견이 제한된다. 또 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지나치게 높은 학력 때문에 해외파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증언이 있었다.

“제대 군인이며 당원이어야 하고 만약 특수부대 저격, 경보, 7청구 별장건설, 연락소 같은 곳에서 일한 사람들은 해외로 못나간다. 중앙당이나 국가보위부 또한 못나가고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도 도망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나간다. …그리고 이력서에 당 생활을 열심히 하였으며 빈공간이 없어야 한다. 북조선 사회에서 죄를 지었어도 안 된다.”<sup>70</sup>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 있다. 중국 연고자(타국 도주 위험), 제대군관(군사 비밀 유지), 호위국(비밀 유지).”<sup>71</sup>

“[해외파견을 나가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어야 하며, 나이는 30세 이상, 외국에 친척이 있으면 안 되고, 원칙상 대학공부를 하면 안 됨. ‘대학에서 배운 것은 국가를 위해 써라’라는 지침 때문임.”<sup>72</sup>

<sup>70</sup> NKHR2014000112 2014-08-12.

<sup>71</sup> NKHR2013000170 2013-09-17.

<sup>72</sup> NKHR2015000099 2015-05-19.

“북한에서 대학 졸업생, 제대 군관들은 못 가게 돼있어요. 규정 상. 그러니까 해외파견 문건에다가 제대 군관하고 대학 졸업생은 다 경력을 위조합니다. ... [제대군관하고 대학졸업자를 해외에 못 가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재 수출로 되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면 막별이꾼 일은 뻔한 거고, 제대군관들 하면 군사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한하고 있고.”<sup>73</sup>

## 2.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23조 2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한 정당한 댓가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자신들이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수입이 높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일 년에 1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얻는데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 년에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파견나간 지역의 현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파견나온 노동자들과 비교해서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저임금은, 중간 관리자들의 착복과 지나친 국가 상납분의 압박, 그리고 임금체불 등 불법적인 사용자들의 행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무능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판단된다.

<sup>73</sup> 북한이탈주민 김홍민(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적 수입을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파견사업장과 어떤 일에 종사하는 지에 따라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러시아로 파견되어 건설사업소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의 경우, 한 달 수입에 대해, “100달러면 큰 거지. 100달러 못받아요. …60~70달러 정도. 한 달 일하고 그 정도 받죠. 60~70달러. …그건 현금으로 주지요”<sup>74</sup>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에서 건설인부로 일한 한 노동자는 아래와 같이 임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 1인이 국가에 바쳐야 하는 돈이 1년에 7천 달러로 정해져 있었고, 그 이외의 소득분을 노동자가 가져가는 구조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7천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떨어지는 돈은 1년에 2천 달러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로 IMF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러시아의 1인당 GDP는 8,838달러이다.

“1년에 2천 달러 벌면 잘 버는 거예요. …2010년도 전까지만 해도 3년에 3천 달러면 많이 버는 거라 그래요. 그렇게도 못 버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요번에 13년도에 나와서는 한 달에 1,000루블씩 하면 얼마인가. 한 30달러예요. 한 달에 30달러씩 줬어요, 노동자들에게. …그 다음에 1년 마무리 총화할 때, 12월달에, 자기 번 돈 국가계획분이 일반적으로 1년 1인당 7천 달러예요. 그런데 그 7천 달러 계획수행하고 나머지 있으면 준다 이거야. 그런데 도무지 수행하기 힘들어. 여기 대한민국 같았으면 7천 달러, 7백만원 벌기 일 없죠? 괜찮죠? 그런데 그 로씨야 땅에서는 벌기 힘들게 돼있어요.”<sup>75</sup>

이와 대동소이한 증언들은 또 존재한다.

<sup>74</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75</sup> 북한이탈주민 김홍민(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1년에 8백불 정도…그것도 많이 타는 거였어요. …일년동안 일해서 아예 한푼도 못권 사람들이 거의 한 30프로 나와 있었어요. …더 버는 사람들도 있지요. 일 좀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벌고, …일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보다 한 50불씩 50불씩 더 주어야 주지요. 실제 일한 거는 한 500불 정도 더 일했는데 그저 한 50불 정도로 더 주죠. …쿠웨이트는 좀더 괜찮았어요. 쿠웨이트는 노동단가가 좀 셋거든요. 거의 한 러시아보다 1.5배정도 노동단가가 …일 년에 천불정도 벌지요. [3년 파견 나가서 실제로 얼마정도 모아서 들어가셨어요?] 이천 사백 불 정도. …평균이에요.”<sup>76</sup>

200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에서 별목공으로 일한 한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는 상황이 더 열악해서 3년 정도 벌어도 노동자가 모을 수 있는 돈은 2천 달러를 넘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정부에 상납해야 하는 ‘계획분’ 때문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간 관리자들의 착복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증언들도 많았다.

“이천 달러, 많이 벌어야. 3년 어간에 많이 벌어야 이천 달러 비축한다고. …한 달에 계약이라면 많이 한다면 거저 백 달러. 백 달러 최고로 많이 받죠. …그거 소대장이 떼먹고 중대장이 떼먹고 하는데, 그답에 우리같은 것 들어간 사람은 월급이 작죠. 기능공들은 월급 좀 더 주고. [그럼 기능공 같은 경우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한 달에 백 달러 이상씩.”<sup>77</sup>

“계산해보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실제 받아야 할 돈이 3,000내지 4,000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실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300달러, 200달러 정도였다. 이 돈으로는 생필품 사고 생활

<sup>76</sup> 북한이탈주민 이종우(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77</sup> 북한이탈주민 민다혁(가명), 2016년 10월 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하기 빠듯하다. …쿠웨이트, 러시아 둘 다 3,000달러 정도 벌어서 왔다.”<sup>78</sup>

“러시아에서 월급은 400~500달러였으나, 식비 등과 국가납부금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100달러를 수령했다. 이마저도 매달 주지 않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주었다. 농사철에는 러시아 농장에 가서 감자농사를 지원하는데, 정도를 보면 500루블 정도를 바쳐야 했다.”<sup>79</sup>

“당 자금으로 국가에서 1인당 300달러정도 받는데 회사에서 사장이 떼먹고 작업반장이 떼먹고 당 비서도 해먹고 하다보니까 약 1,500달러 중 국가에 950달러를 바치는데 얼마가 가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개인들이 가져가는 돈을 빼면 300달러정도가 당 자금이 될 것이다. 중간에 다 착복해 먹는다.”<sup>80</sup>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도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할린 같은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북한 노동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 사업소 밖의 청부를 받아 일하는 경우, 사할린에서 일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연 1만 달러까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2014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가 1,400달러 수준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sup>81</sup> 상당한 고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수입이다. 물론 모든 사할린 파견 노동자들이 이런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sup>78</sup> NKHR2015000144 2015-10-06.

<sup>79</sup> NKHR2014000063 2014-06-03.

<sup>80</sup> NKHR2014000112 2014-08-12.

<sup>81</sup> CIA, The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그저 사할린은 대략적으로 한 1,000불은 남으니까요. …사할린은 그저 보통 그 정도. …1년에 10,000불.”<sup>82</sup>

“[80년대 중반에 파견 나가셨을 때도 월급 받으신 거죠?] 월급이 그니까네 도급 경우는 그저 한 100달러 정도. [2000년대 중반에 나가셨을 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제가 산지 올라가서 일했는데 고저 뭐 한 50. 손에 쥐는 건 한 50달러 정도. …한 3년 정도면 벌어진 걸로 먹고 살고 고저 남은 걸로 잘 살 수 있죠. …대체로 한 번 갔다 오면 그저 3천 달러면 많이 버는 거고 한 1500달러 정도면 그저 쓸쓸하게 그저.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나가서 정부해서 번 사람들은 1만 달러까지 가져가고 그러죠.”<sup>83</sup>

사할린 파견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러시아 파견의 경우, 2012년 이후에는 이미 열악한 임금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증언이 있었다. 같은 증언에서는 또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러시아 노동자들에 비해 스스로가 받는 임금이 형편없을 정도로 적다는 것은 북한 노동자들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건 상으로는 5~6천 달러로 만들어놓는다.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그 정도이다. 실제 지불은 11년도까지만 해도 3천 달러 정도 됐는데, 12년 이후로는 2,500달러만 받아도 진짜 많이 손에 쥐는 것이고 한 두 명만 받을 수 있었다. 보통 1년에 1,000~1,500달러를 받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일반노동자가 1달이면 벌 것을 북한 사람들은 1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sup>84</sup>

<sup>82</sup> 북한이탈주민 정경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83</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학(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84</sup> NKHR2014000202 2014-12-02.

실제로 자신이 받은 금액과 우크라이나 현지 노동자들이 받은 금액을 비교해 계산해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은 현지 노동자 임금의 5~7%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100프로 받았다 하게 되면, 우리 5프로~7프로 어간이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게.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값에.”<sup>85</sup>

현지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북한의 노동자들은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으며 노동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휴식시간에 담배랑 피우면서, 그때 손짓 몸짓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받냐? 다 받는데요. 얼마 받냐? 600달러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우리는 환장하는 거죠. 와 이 사람들은 600달러 받는구나. 기술자가 600달러 받는가 했더니. 아니네. 일반, 제일 막일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막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얼마 받냐 하니깐. 기술자는 1,000달러 받고. 이거는 600달러 받는데. 그러니까 그 천한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은 레벨일 거야. 아마. 우리 어쨌든 짠 나라에서 왔으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왔으니까. 그보다 아래면 아래지. 위는 아닐꺼예요. 그럼 뭐냐? 600달러보다도. 우리가 최소 600달러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120달러 받네? 그래 환장하는 거지. …지금 내가 와서 계산해봐도 그거다 해도 120달러는 너무 작은 거지. 한 절반이상은 줘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북한 당국이 갈취하는 거나 같죠.”<sup>86</sup>

<sup>85</sup>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 9월 28,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86</sup> 북한이탈주민 최순우(가명), 2016년 9월 29,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첸이야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같이 일하는데 북한사람들이 노임이 제일 싸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하게 되면 월급을 한 평방당 이백 루블 준다고 하면, 북한사람들은 한 백오십 루블 줘도 일하니까 그렇게 해도 북한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밤늦게까지 일해야 이 사람들은 공정기간이 단축되게 되면 기사들이 상금이라는게 나온대요. … [쿠웨이트에 계실 때 다른 외국인 노동자는 한 몇 불정도 벌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천 불씩 탄다고 했어요. …러시아 있을 때 사람마다 다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본족이 제일 많이 타는데 (그 사람들이) 그저 한 천 오백 불 정도.”<sup>87</sup>

작업소장직을 맡은 경험이 있는 한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북한 당국의 정책이다. 노동자들에게 돈이 생기면 사업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에서는 노동자들한테 돈을 안줘요. 너 이번 달에 300루블이야. 말만. 너 이번 달에 5,000루블이야. 년 말에 총 얼마야. 그러니까, 증도에 내가 아파서 일 못했다 하면, 자기가 쌓아 놓은 돈에서 다 계속 깎아내죠. 노동자들 현 주머니에 돈 못 들오게. 노동자들 주머니에 돈 있으면 달아나니까.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담에 작업소장마다 또 다르고.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80~90%는 노동자한테 돈을 안줘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년 말에 총화해주고, 대신 년 말에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매달, 한 60달러씩 벌었다 하는 경우. 1년이면 600달러 되지요. …나 집 돈 보내야겠는데 나 돈 좀 주시오. 그럼, 회사환자 누구 들어가는데, 가 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돈 주지

<sup>87</sup> 북한이탈주민 이종우(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요. 그때 돈 만져서 100달러, 200달러 쥐어주면 넣어놓고, 나머지 는 퐁퐁 써서 자기 색시한테 보내지요. …내가 작업소장 하니까 이따금씩 회의. 보름에 한 번씩 회의 참가하는데, 회의 참가 하게 되면, 보위지도원이 사장이나 보위지도원이. 사장이 나와서 사업지시 주고, 보위지도원이 나와서 사업지시 주고 하는데, 그 소리 하지요. 야 대사관 지시요. 대사관 지시인데 하면서, 대사관 지시라는 게 조국의 지시지요 뭐. 조국의 지시인데 하며 말하는 게 …돈 주지 말라. 현금 주지 말라. 그저 노동자가 나 담배 당장 피겠다 하면, 담배 사주고, 빵 먹어야겠다 하면 빵을 사주지 돈을 주지 말라고. 보위지도원이 그렇게 말한다고. 나쁜 자식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돈만 쌓으면 달아나니까. 돈을 쥐어주지 않아요.”<sup>88</sup>

“일은 죽도록 하는데 생활비는 따로 주지 않았다. 일을 하고 수표는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돈은 하나도 없었다.”<sup>89</sup>

이렇게 밀리는 월급은 노동자가 급히 귀국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페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월마다 정기적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나가게 되면 원칙은…우리 평양시 건설총국은 역사가 있어요. 월급을 1월 달에 일 한 걸 2월 달에 줘야 되는데 2월 달에 안줘요. 여섯 달을 밀려서줍니다. 쿠웨이트 나왔을 때는 여섯 달을 밀려서 주는데 러시아는 넉 달을 밀려주더라고요. 넉 달 밀려서 주다가 1월 달 월급을 타려면 5월 달에 가야 월급을 주죠. 이런 방법으로 5월 달에 1월 달 월급을 주고 그다음 6월 달에 이월 달 월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밀려서주죠. 그러다가 내가 몸이 아파서 집에 가야 된다 이러면 나머지 월급을 12월 달이었으니까 여섯 달 월급을 통째로 없지요. …현금으로.”<sup>90</sup>

<sup>88</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89</sup> NKHR2015000144 2015-10-06.

<sup>90</sup> 북한이탈주민 이종우(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일한 만큼 돈을 쥐야하는데 그 돈을 북조선에서 러시아로 오는 비행기 값, 거주지 값 등 각종 명목으로 1년 동안은 무보수 노임이다. …당 자금 명목으로 너희를 파견했지 개인 돈 별이를 위해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의식교육을 한다.”<sup>91</sup>

티무니없이 적은 액수나마 돈을 모아 북한으로 귀국하는 것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꿈이다. 그런데 위의 증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나마 이 적은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을 고용한 현지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생겨도 북한 당국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노동자들의 몫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점점 가면서 북한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고립된 나라 다보니까, 나라도 아니에요. 이제는 러시아 땅이나 중국에서 북한정권을 인정 안 해주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노동자들이 일하면 로씨야에 있는 회사 사장이든 중국에 있는 회사 사장이든, 중국에 있는 사람들 대방, 그 놈들이 북한 회사하고 체결해서 이제 계약한대로 돈 조금 주다가 마지막에 어물쩍 때요. …(북한 회사가 돈을 지불받지 못하는 상황) 많죠. … 내가 지금 일하면서도 천만 원 어치 돈 못 받고 열댓 명 정도 일해가지고 천만 원 정도 못 받고 그 다음에 회사에다가 말해서 ‘법을 발동해서 이거 대응합시다’, ‘아니 돼’, 이걸 대응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제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벌써 이게 잘못 됐구나, 이게 나라야? 그러면서 회사에서 ‘야 너 천만 원 못 받았지? 다른 데는 몇 억을 못 받고 있어’ 그렇게 말하죠, 회사 사장이.”<sup>92</sup>

<sup>91</sup> NKHR2014000112 2014-08-12.

<sup>92</sup> 북한이탈주민 김홍민(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어떤 땀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 작업반이, 우리 작업소가 반년동안 못 받은 적 있어요. [반년 가까이 막 몇 개월씩 임금이 끊기고 이런 일이 흔한 편인가요?] 뭐 흔하지. 그게 흔하다고. 하여간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있어요. 각 작업소마다.”<sup>93</sup>

“못 받았습시다. …직장장이 한꺼번에 받는지, 러시아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끝나게 되면 주게 되는지, 돈 문제는 알 수도 없고 상관도. 그건 우린 모르니까. …월급 있다는 거 자체가 거짓말이고. 물건 상에는 다 내준 것으로 만들어서 조선에 다 내보내다 주니까.”<sup>94</sup>

### 3.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벌목, 건설 등 힘들고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노동자들에게는 항상 작업장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 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북한 및 파견대상국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초적인 수준의 안전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파견 지역과 시기 등에 따라 증언에 차이가 있지만, 안전모 등의 기본적인 장비도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 안전 장구의 기본적인 질과 양이 부실하여 노동자들을 각종 사고에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기는 힘든

<sup>93</sup> 북한이탈주민 김석영(가명), 2016년 10월 1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94</sup> NKHR2016000163 2016-11-01.

환경이며, 기본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는 작업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상당히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 사고 이후 장애 발생 시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결국 그 위험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안전장구 지급과 안전교육 여부를 질문해 보았다. 안전한 노동을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것은 안전모, 안전화를 비롯한 기본적인 안전 장구류들이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안전장구류의 지급은 이들을 고용한 현지 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고용된 업체에 따라 안전장비의 지급 여부와 수준에 대한 증언은 엇갈리고 있다. 일단 노동자들은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안전 장비는 해당 업체에서 지급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 건 다 줘요. 해당 러시아 회사에서 그건 지불해요. 지불하는데, 불편하니까 잘 안 써요. …그런데, 감독, 통제하는 사람은 없고.”<sup>95</sup>

“네. 산지에서 줘요. [옷이나 작업복이나 정기적으로. 신발도?] 네. 줬습니다. 네. 신발도 겨울신발 따로 줬어요.”<sup>96</sup>

“국가일 할 때는 러시아 대방이 또 검열이 싸니까. 그건 다 갖고 있었고. …북한회사에서 주고. 시기마다 다르고. 건설현장마다. 어떤 건 러시아 대방이 주는 거도 있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자체로 살 때도 있었고.”<sup>97</sup>

그러나 지급되는 안전장비는 안전모 혹은 작업용 신발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며 그 질과 양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sup>95</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96</sup>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 9월 28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97</sup> 북한이탈주민 정경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우린 가서 안전모만 받았어요. 안전모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용품은 없었어요.”<sup>98</sup>

“안전모라는 자체도 없고. 신발 하나 줍니다. 겨울에. 왈랭끼.<sup>99</sup> …발 얼지 말라고. 발 추우면 못 하니깐니 왈랭끼 하나씩. [질이 좋은 편인가요?] 예. 그전에 옛날 소련제인데 그것도 한 94년도 넘었을 때는 그것도 받지를 못하니깐 소련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깐 그것도 없습니다. 조선서 동화(冬靴)를 그저 하나씩.”<sup>100</sup>

“안전모 이런 거는 글썄요, 뭐 모자까지 그래도 장갑, 작업복 같은 거 주기는 주는데 만족하게 못 주고 그저 조금씩 준다든 형식으로 그저. …노동자 옷 같은 것도 모자르니깐니 본인들이 자체로 천 이렇게 오려가지고서 기워서 장갑도 만들어서 끼기도 하고.”<sup>101</sup>

안전장구의 질과 양이 떨어지는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급된 안전장비마저 작업 효율이 떨어지거나 노동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자 개인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들을 고용한 회사에서 안전 교육이 미비한 탓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로씨야도 아직 그 고도의 발전된 나라가 아니니깐 안전모 착용을 세계 요구하는 건설장이 있고 요구 안 하는 건설장도 있어요. 그런 데는 모자 쓰면 불편하잖아, 안전모 쓰면. 그러니 까 안 쓰고 다녀도 무방한 데 가서 일할 때도 있고. [북한 회

<sup>98</sup>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 9월 28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99</sup> 방한용 러시아식 롱부츠를 의미한다.

<sup>100</sup> 북한이탈주민 나진구(가명), 2016년 10월 1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01</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학(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사 측에서 당부하지 않나요?] 그건 뭐, 죽을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하나도 상관 안 해요.”<sup>102</sup>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여부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외노동자들의 진술을 시기와 파견 장소 등에 따라 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안전교육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그저 안전모 쓰고 하라 사고 나면 너 잘못이기 때문에 안전 규약 말 안 해줘요. 그렇지만 검사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 거저 그 중대장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한 번씩 말하죠. [높은 분이 오면 쓰고 있어라?] 예.”<sup>103</sup>

그러나 위의 증언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반된 증언도 존재했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노동자들을 고용한 러시아 회사 등에서는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파견한 북한 측에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저 회사에서 좀 얘기를 해요. 자꾸 사고 나고 어케됐다 안 됐다 그러면 어케되면 판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회사에서 안전모, 안전바 이런 거 다 착용하게 하라 그래요, 무조건 아침에. [북한 회사에서요?] 응 회사에서 그걸 착용하라고 하는데.”<sup>104</sup>

<sup>102</sup> 북한이탈주민 김홍민(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03</sup> 북한이탈주민 현태준(가명), 2016년 10월 4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04</sup> 북한이탈주민 나인현(가명), 2016년 10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네, 그거는 자기네도 안전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일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시끄러워서 벗지. 기래서 그 회사에서 이따금씩 현장을 보러 나오거든요. 그때는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거든요. 나갔다고. 그러면 또 뭐, 모자 쓰고, 그니까 모자 옆에다 항상 놓고 있어요. 일할 때. 있다가 오면 다 쓰고, 또 있다가 가면 다 벗어놓고. …긴데 뭐 물어보니까 로씨야 건설 회사들이 안전국하고 췌게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북한 회사 측에서 안전모 써라 강제하는 거 그런 건 없나요?] 에이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쓰갔으면 쓰고 말갔으면 말고 돈이나 그저 벌어들이고 그러지. 그건 뭐 그것들이 그런 것까지.”<sup>105</sup>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지급해주고 착용 안 하면 퇴출시킨단 말이에요. 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고 나면 회사 손해기 때문에 안전 감독이 아무 현장이나 가면 너무나 세계 통제를 하죠, 사고 날까봐. …싫다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놈들은 무조건 착용시킨단 말이에요. [북한 회사 쪽에서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같은 거 시킨 적 있나요?] 우리도 당연하죠. …현장마다 안전규칙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현장마다 각이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안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팜플렛들이 찍어서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매일 일하기 전에 매일 읽고 시작하니까 다 머릿속에 있죠, 사람들이.”<sup>106</sup>

“안전교육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주일인지 안전교육을 합니다.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안전교육이었나요?] 예. 자체로 만든 거죠. …뭐 나무 넘어갈 때 잘 봐라 뭐 그런 거.”<sup>107</sup>

“[북한회사 측에서 그렇게 안전교육을 한 적은 없나요? 안전모 꼭 써야 되고?] 그건 항시적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sup>108</sup>

<sup>105</sup> 북한이탈주민 김석영(가명), 2016년 10월 1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06</sup> 북한이탈주민 조명택(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07</sup> 북한이탈주민 나진구(가명), 2016년 10월 1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08</sup> 북한이탈주민 정경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전체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기초적인 수준의 안전교육은 북한의 파견회사 혹은 파견국의 고용회사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교육은 작업 중 의도치 않은 사고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한 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 사고나 질병은 상존하는 위협이며, 상당히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런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진다. 아래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이 즉각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는다.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차 화물칸에 시신이 다 차기를 기다려 한꺼번에 북한에 운송했다고 한다.

“우리도 그 사업소에서 하나 결핵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도 페니실린 돈이 얼마야, 그 돈이 없어서 제 방에서 죽었어. 그 사람도 시신을 그냥 못 내가죠. 그러니까 화장을 한단 말이야. [작업 중에 나무에 맞았다거나 그래서 돌아가신 문들은 있나요? 사고사?] 있죠. 많이 있죠. 자주나요. …임업은 사고 굉장히 자주나요. …그러니까 빵통에<sup>109</sup> 시체가 10구가 차야 나가요. 사람이 죽자마자 북한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시체가 차야. 빵통의 경제적 효과를…돈 많이 드니까 빵통에 열개면 열개씩 시체가 차야 나가.”<sup>110</sup>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의 경우, 북한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그 보험금은 개인이 받지 못하고 북한 당국에 돌아간다는 증언도 있었다.

<sup>109</sup> 기차의 화물칸을 칭하는 북한식 표현.

<sup>110</sup> 북한이탈주민 민다혁(가명), 2016년 10월 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의무실도 없어요. …다치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들어가서도 다시 신체검사해요. 다시 재검사해요. 북한에서 아무리 했어도 또 다시 해요. 그래서 한번 한명은 걸려서 신체검사에서 걸려서 나간사람 있었고, 도중에 사고난 사람 하나 있었어요. …작업장에서 하다가 다 철근 이런 건데 눈이 찢렸어요. 완전히. 고용회사에서 데려가서 한 게 다음날에 봉대하고 나왔어요. 봉대하고 또 업무를 해요. 안구를 그냥 뽑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용회사에 해가지고 보험은 다 타겠지요. 타서 북한 당국에 들어갔겠죠. 개인한테 주는 거 없어요. 보험당연이 타지 않겠어요. 북한이 그런 거 귀재인데, 눈이 찢렸지만, 다음날에 봉대를 감고. 그 사람이 간부였어요. 간부지만 또 일했어요. 그래야지 충성심이 평가되니까 들어가서.”<sup>111</sup>

그러나 사고에 대한 보상 혹은 보험금 지급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간단한 치료는 노동자들이 개인 비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의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보상해주었다고 한다. 다만 보상 절차는 복잡하여, 노동자들이 일일이 사소한 질병이나 부상까지 청구하기 보다는 차라리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큰 부상당하면 회사에서 보상해주고요. 작은 치료 받을 거 같은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회사까지 가고 뭐 이러면. 자기가 러시아 병원에 가서 자기가 돈 내고. 돈 뭐 비싸지 않았으니까요.”<sup>112</sup>

작업장에 따라서는 사업소 자체적으로 갖추어진 치료소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약품이나 의료 시설이

<sup>111</sup> 북한이탈주민 최순우(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12</sup> 북한이탈주민 정경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갖추어진 치료소가 아니라서 사소한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라면 외부의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심한 부상이라면 높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노동자도 있다는 증언이 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사업소, 연합에 병원이 있긴 있는데 병원이라는 게 완전히 허약하니까니 치료라는 게 약도 없고 제대로... 러시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크게 팔 절단 되고 이런 사람은 조기 귀국시키고 내보내고 어지간한 거 무슨 약간 치료해야 되는 대상들은 입원시켜서 사업소에서 치료해주고. ...사업소에서 치료해준다는 게 약은 다 본인이 사 쓸 때. 다치면 본인밖에 손해 보는 거 없죠.”<sup>113</sup>

“[갑자기 큰 수술이나,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건 자기가 번 돈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갓 들어온 사람들은 회사 측에서도 도와주는데, 3년이나 4년 일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 자기 돈을 써야 한다. 결국은 돈을 벌다가 병 걸리게 되면 자기가 돈을 써서라도 복에 가려고 한다. 결국은 3년 일했어도 병 걸려서 거기서 치료받으면 돈이 다 없다. 그런데 북한에 오면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에 나오려고 한다.”<sup>114</sup>

문제는 부상 시의 치료뿐만이 아니다. 심한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 적절한 사후 보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사고 많이 나요. 사람죽고 그저 나무 자빠지면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한눈만 잘못팔면 트락뜨르 같은 거. 잘못하면 다

<sup>113</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화(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14</sup> NKHR2013000196 2013-10-29.



절단 나뉘는, 나무 자빠지는데 깔려서 얻어맞고...같이 얻어맞아서 (...) 네. 다 한 명 씩, 그게 명색이 의사가 있지 아프면 연합에 올려 보낸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가 일하다가 다리가 절단됐어요. 소련 들어온 지 일 년 됐단 말입니다. 차 끌다가...가지(갓) 온 사람들은 새 차 안줘요. 그때 들어온 기능공들은 새 차 주고 들어오자마자 새 차 안줘요. 그 사람은 차 몰다가 바람이 나서...나무하는 데가 한 30도 40도 되요. 내리막길에서 쏠살같이 달려오다가 사고가 나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단돈 일전도 없단 말이에요. [다리가 절단되어 다시 북한으로 나가게 됐는데 보상금이 전혀 없다는?] 아예 없죠.”<sup>115</sup>

#### 4.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17조 역시 세계인권선언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sup>116</sup> 당사국에게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간섭 및 비난을 금지하고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117</sup>

<sup>115</sup> 북한이탈주민 민다혁(가명), 2016년 10월 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16</sup> 자유권규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sup>117</sup> 자유권규약 제2조; HRC, General Comment No. 16 (Art. 17), para 1.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자유권규약을 비준했다.<sup>118</sup> 당사국인 북한은 제17조에 위배되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에 관여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와,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제도를 제공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sup>119</sup>

앞서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 해외노동자의 파견은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북한은 현지에서도 중앙집권적인 통제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파견된 노동자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현지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한다. 현지국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sup>120</sup> 작업 현장에 따라 현장 임시 숙소에서 숙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21</sup> 물론 작업현장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의 숙식 자체를 집단생활이 강제되고 있다거나, 개인의 주거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작업조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활동할 여지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숙식 형태 자체의 문제보다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한 생활감시 및 상호감시 시스템이다. 북한 당국은 해외노동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북한의 현지

<sup>118</sup> 북한은 1997년 8월 25일 자유권규약 탈퇴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권규약에는 탈퇴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바, 유엔 사무총장은 1997년 9월 23일 조약법을 검토한 후, 탈퇴규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 전체의 동의가 없는 한 탈퇴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UN Doc. C/N/467.1997 (1997). 탈퇴를 주장한 이후 북한은 1999년 자유권규약의 이행에 관한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에서는 자유권규약 탈퇴 사실을 다시 주장하기도 하는 등 일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예준 외,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통일연구원, 2016), p. 5, 각주 4 참고.

<sup>119</sup> HRC, General Comment No. 16 (Art. 17), para 9.

<sup>120</sup> 북한이탈주민 신강섭(가명), 2016년 10월 6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21</sup> 북한이탈주민 김석영(가명), 2016년 10월 1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조명택(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등.

기업소 마다 대략 당비서 한명과 보위지도원 한 명 이상을 파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22</sup> 파견 인원의 구성이나 숫자는 사업소의 크기와 현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sup>123</sup> 해외노동자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위부원의 파견은 1990년대 파견 노동자의 증언과 2000년대 이후의 파견 노동자의 증언에 있어 차이가 없다. 러시아와 쿠웨이트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할 때, 이들 보위지도원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기장원’의 직책으로 파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 1, 2]

**예 1 |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중반 쿠웨이트 및 러시아 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회사에 한명씩. …보위지도원이 보위지도원 겸 노동안전 말아보게 되어있고 초급당, 당 부비서로 되어있어요.”<sup>124</sup>

**예 2 | 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러시아 벌목 현장에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사업소 당 한 명씩. …그저 사업소에 국가 보위부에서 한 명씩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있지요. 명칭은 뭐 노동 무슨 안전기장원이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해요.”<sup>125</sup>

한편 2010년대 초·중반까지 러시아 건설현장에 파견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을 참고할 때, 이들 보위지도원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실제 역할과는 달리 불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sup>122</sup> 북한이탈주민 최순우(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당비서 한 명 있고, 보위지도원 한 명 있어요. 기업소마다. 사업소 마다” (1996년 쿠웨이트 파견).

<sup>123</sup>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 9월 28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저희 때 4명인가 5명. …100명당 한 명씩.” (1992년, 1997년 러시아 벌목 파견).

<sup>124</sup> 북한이탈주민 이종우(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25</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학(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회사마다 다 보위지도원이 다 붙어 있거든요. 한명씩. …1번이 지배인이고요, 2번이 당비서고, 3번이 보위지도원이에요. [아 그게 서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1, 2, 3번을 1번, 2번, 3번.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도록) 요구해요. 그게 왜 그냐면 3번 같은 거는 보위지도원은 원래 로씨야에 못 들어오게 돼있네요. 군복쟁이들은. 그라고 1번, 2번은. 2번도 원래 당비서도 하나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어케돼서. 하여간 우리에게 1, 2, 3번 숫자로 부르라고 그랬거든요.”<sup>126</sup>

북한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대표적인 주민 사생활 감시 제도로는 5세대를 1개 단위로 묶어 그 중 열성당원인 세대주를 5호 담당선전원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세대의 가정생활 일체를 간섭·통제하는 제도가 있다.<sup>127</sup> 인민반 제도와 생활총화 제도 역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통로로 활용된다.

북한 내부의 이러한 주민 감시 시스템은 해외파견 노동자의 생활공간에서도 일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1990년대 파견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비해[예 1, 2, 3], 2000년대 이후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러한 상호감시 시스템의 현지에서의 작동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증언한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다[예 4, 5, 6].

#### 예 1 | 90년대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그거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지. 세 명 하나는 다 그런 사람들이예요. [셋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스파이?] 예. 그거는 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위부, 안전부에서.”<sup>128</sup>

<sup>126</sup> 북한이탈주민 김석영(가명), 2016년 10월 1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27</sup>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133.

<sup>128</sup> 북한이탈주민 현태준(가명), 2016년 10월 4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 예 2 | 90년대 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그렇지, 유지되죠. 그게 한 80% 차지해요. [고발하는 거의 80%가 노동자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지, 그게 제일 나쁜 습관인데 그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믿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딱 봉인해요. 이거 열면 그저 난 감옥이예요. 그러니까 딱 봉인해요.”<sup>129</sup>

### 예 3 | 90년대 중반 쿠웨이트 건설현장에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그게 누가 보위부 스파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북한사람과 북한사회의 정서상 그거는 꼭 있고.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북한이 이런사회예요. 그냥.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내가 2인 자리든, 3~5인 자리든. 가깝게 우리 둘만의 술 먹으면서 야 친구야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내가 불만소리 했어. 그러면, 거기는 나를 인간적으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고 하는 거예요. 상부에다가. 그러면, 나는 처벌 받고 거기는 승진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똑같이 처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위해서 보고해야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굳이 누가 스파이 임무를 안줘도. 자동 각자가 스파이예요. 그냥. 북한주민들은 각자가 감시하고, 각자가 스파이야. 그렇게 보면 돼. ...[현지에서도] 다 똑같아요. 북한사람은 해외 나가서도 북한사람이고.”<sup>130</sup>

### 예 4 | 2000년대 초반 러시아 벌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그런 건 없어요. [생활총화때 뭘 고발한다던지?]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감시하기는...뭘 고발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근데 또 크게 뭐.”<sup>131</sup>

<sup>129</sup> 북한이탈주민 신강섭(가명), 2016년 10월 6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30</sup> 북한이탈주민 최순우(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31</sup> 북한이탈주민 민다혁(가명), 2016년 10월 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 예 5 | 2010년대 초·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작업소, 작업소, 그리고 작업조 나가있으면 작업조 거기에 하나씩 스파이를 만들거든요. [그럼 못해도 5명에서 10명 사이 중에 꼭 한 명씩은 있는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박박, 그저 박박하다곤, 박박하기까진 아닙니다. 제가 뭐 일만 하고 뭐 따 른 거 제기되지 않는 일 하지 않는 이상은 일 없어요.”<sup>132</sup>

### 예 6 | 2010년대 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 증언

“보위지도원이 작업반마다 스파이를 하나씩, 그놈들이 보고하 죠. …이 사람들도 보위지도원 밀정을 해도 백프로 말 못하죠. 왜냐면 이사람 왕따 당하니까 저거 보위지도원 밀정이야.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위지도원 자주 만나는 아이들은…그 사 람은 왕따 당하니까. 자기도 마지못해서 한두건은 말해야 되 겠으니까 제일 좀 만만한 놈들, 주먹이 센 놈들은 보고 못하고 만만한 놈들을. …북한 내부보다는 좀 훨 하죠. 여기는 자본주 의 세계에 왔으니까 사람들 자체가 자본주의 이런 거 머릿속 에 들어있기 때문에…여기서도 자유를 억제하면 어떻게 사니? 하고 노골적으로 말하죠.”<sup>133</sup>

주로 1990년대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현지와 같은 형태로 상호감시체제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2000년 대 이후 파견된 북한이탈주민들은 파견 보위지도원에게 보고하는 사람 (소위 ‘스파이’ 또는 ‘세포비서’)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감시 시스템이 엄격하지 않다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지와 같이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부분은 해외파견 노동자의 생활환경 역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개인의 사과의 변화로부터 비롯되고 있음

<sup>132</sup> 북한이탈주민 김석영(가명), 2016년 10월 1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33</sup> 북한이탈주민 이종우(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한편, 북한 주민들은 당이나 근로단체와 같은 소속 조직에서 주, 월, 분기, 연별로 각자의 업무와 공·사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갖는다. 이러한 생활총화 제도의 운용은 사생활을 자기검열하고 공개하며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sup>134</sup> 생활총화 제도에 대해 파견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현지에서도 운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파견 시기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북한 내부에 비해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 1 | 90년대 초·중반 러시아 별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북한에서는 기준이나 성격이 좀 강하죠. 그러나 해외파견된 부분이 있고 가족이나 이걸 다 떠났고 요구하는 당 일꾼, 부분 당 비서가 요구하는 것도 ‘됐어요’ 절반 농질로 대응도 하고 조금 막 나가는 형태고 보니까 생활 총화를 아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요. 그건 견뎌나지 못해요. 형식이든 뭐든 해야지, 안 했다 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해요.”<sup>135</sup>

**예 2 | 2010년대 초·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1주일에 한 번씩 하지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해요. ...12시 작업 끝나는게 토요일, 일요일날도 없는데. 형식적으로나 뭐 어차피 가야지. 진행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은 강연회 회사에 무조건 들어 가야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사에서. 회사에 건물 쓰고 산다고 했죠. 그거는 무조건 들어가

<sup>134</sup> Sarah Joseph & Melissa Casta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324;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 135.

<sup>135</sup> 북한이탈주민 김강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야 해요. 무조건 들어가서 강연회는 무조건 들어야 되요. 정은이가 요즘 뭐 하며 돌아간다. 김정은 동지께서 요즘 어디 현지 지도 하셨고, 우리 조국은 적들이 뭐 죽이겠다 하지만, 우리는 곳곳이 살아 버틴다 뭐 이딴 그런 강연회는 무조건 들어야 하니까. 그건 들어가요.”<sup>136</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시나 제한 정도는 시대 및 여건에 따라 다를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은 보위부원의 파견과 상호감시 체제의 운용을 통해 파견된 해외노동자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단독 외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7</sup> 그러나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개인 혼자서 이동이 가능했다는 증언도 있으며[예 1, 2, 3], 이러한 개인적 외출 제한이 언어적 장벽이나 단독으로 외출할때의 위험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도 있다[예 4].

#### 예 1 | 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대 중반 러시아 벌목 현장에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우리 거기는 뭐 개인적으로 나가도 돼요. …원래는 나가는 거 뭐 승인 받고 나가라 이러는 데는 그저 승인 받고 나갔다 오죠.”<sup>138</sup>

<sup>136</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37</sup> 위의 증언, “집체적으로 다녀야 하니까. …10명 내지 15명, 20명 이렇게 우루루 몰려다니죠.” 북한이탈주민 현태준(가명), 2016년 10월 4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혼자는 못 가게 돼 있어요. 2명, 3명이 다니고”

<sup>138</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학(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 예 2 | 2000년대 초반 러시아 벌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혼자 갈 때도 있고, 같이 갈사람 있으면 같이 가고.”<sup>139</sup>

## 예 3 | 2010년대 초·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예, 그저 그래요. 근데 담배나 술 같은 거, 원래 로씨야도 같 아요. 그저 착 나가면 상점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혼자서도 나가요. 그런 거 뭐 5분 아니면 10분이면 들어오니 까요. 그저 이런 거리 돌아다니거나 뭐 이런 거나 그렇지요. [거리 돌아다니는 게, 진짜 산책 개념으로 쉬기 위해 돌아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명절날 같은 때, 그럴 때는 계속 아낙에서 있지 못하니까 야 우리 어디 뭐 구경 나갔다 오자, 그럴 때는 혼자서 못 다니거 든요. …두 명 이상, 두 명 이상은 돼야 되요. …예, 두 명 이상부터 그니까 혼자서는 절대 단독으로 못 다니게 해요.”<sup>140</sup>

## 예 4 | 90년대 중반 러시아 벌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그렇게 같이 나가요. 또 혼자 안 나가요. …말도 못하고 말하 지면, 혹시 쏘련 애들이 이제 우리를 영 알봐요.”<sup>141</sup>

기존 조사와는 달리 현지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접촉이 엄격히 차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사람과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에 대한 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예 1, 2].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나 현지인과의 대화 등은 회사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통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대화가 어려운 경우는 있어도 단속을 통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sup>139</sup> 북한이탈주민 민다혁(가명), 2016년 10월 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40</sup> 북한이탈주민 김석영(가명), 2016년 10월 1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41</sup> 북한이탈주민 신강섭(가명), 2016년 10월 6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예 1 | 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러시아 벌목  
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크게 무슨 우즈베키스탄 사람하고 말하는 건 크게 단속 안  
하고. …그저 뭐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 사  
람하고 말하지 말라고.”<sup>142</sup>

예 2 | 90년대 중반 쿠웨이트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현장 나오기 전에 평양에서 떠날 때 보위부 강습에서 그런  
이야기 줘요. …남조선 사람들 조심하고, 남조선 대사관 가지  
도 말고, 외국 사람들 중에도 남조선 스파이가 많으니까 함부  
로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했지. 그런걸  
다 받고 나왔으니까.”<sup>143</sup>

예 3 |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

“말하지 말라는 요구인데요. 우리 회사요구는.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일을 못 찾으니까. 거기선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회사에서 통제안하고.”<sup>144</sup>

예 4 | 2010년대 초·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외국인 노동자와의 대화는] 아니 일없습니다. 막진 않아요.  
그카고 그 사람들 아니 회사기보다도 뭐 재네가 뭐 그렇게 말  
해야 일하면서 되는 걸 뭐 어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작업 현  
장까지 올라와 보지도 못하는 거구요. 작업장에 같이 있으니  
까 그런 것 통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죠. … [외출시  
현지인과의 대화는] 그건 원래부터 회사에서부터 요구가 우리

<sup>142</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학(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43</sup> 북한이탈주민 최순우(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44</sup> 북한이탈주민 정경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북한에서와 같죠 뭐. 외국 사람들하고는 일 없어요. 근데 한국 인하고는 접촉하지 말라고 해요. ...외국인은 일 없어요. 근데 한국인 그 답에 조선족.”<sup>145</sup>

최근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회사 또는 보위부 차원의 검열이 있기는 하지만, 휴대폰을 제한적으로나마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철저히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예 1 |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

“[핸드폰도 가지고 계셨어요?] 네. 사할린은 다 있으니까. ... 다 스마트폰으로. [다 인터넷도 하고요?] 네. ...그거는 보위지도원이 쓰지 말라는 요구인데요. 그래도 이제처럼 다 그저 못 본척 하고 가만히 있고. 자기들도 돈 받고 그저. ...뇌물이라기 보다 다 이제처럼 청부 나가면 보위지도원들하고 사이다 자기네도 나쁘면 좋은게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담배 값이라도 줌 주고 하는 거지요. [한국 뉴스나 그런거를 많이 보게 되면, 탈북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나요?] 그런데, 이제처럼 인질들이 있으니까 집에 가려고 하지.”<sup>146</sup>

#### 예 2 |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중반 네 차례에 걸쳐 쿠웨이트 및 러시아 건설현장에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그 이전까지는 인터넷망이 활발하지 못했죠. 그렇고 폴더폰같은 거 쓰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2013년도 가서는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실제는 거기서 10명이고 뭐고 단위 책임자가 개설하는 거예요. 단위 책임자, 그러니까 작업장이라는 게, 10명이서 일하는 작업장도 있고 5명 일하는 데

<sup>145</sup> 북한이탈주민 김석영(가명), 2016년 10월 1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46</sup> 북한이탈주민 정경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도 있고 각 분할돼서 있는데, 거기서 5명이서 일하면 거기 책임진 사람 1명만 스마트폰이 아니고 폴더폰 같은 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폰만 쓰라 이거예요. ...내가 책임자였어요.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개통하신 거네요?] 그렇죠. ... (일반 노동자의 경우) 그 속에서 또 이제 몰래 쓰기도 하죠. 보위지도원들이 좀 썰 사람들은 무조건 회수하고 들고 가는데, 그 속에서도 보위지도원도 같은 지도원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지 뭐. 그 회사는 거의 다 쓰죠.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만은 쓰지 말라 이거야, 아예. 터치폰이나 폴더폰은 써도, 그것만은 무조건 쓰지 말라. 그건 철저히하지. ...핸드폰은 노동자들은 못 쓰게 책임자들만 쓰게 돼있고 스마트폰은 직위 사장이고 그 어떤 직위도 쓰지 말라고 해요.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누구나 다, 북한 그런 요구 체계예요.”<sup>147</sup>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사생활, 주거, 통신에 대한 제한이 제17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인지 여부는 개별 사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실상 집단적인 주거생활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통신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보다 포괄적으로 생활총화의 강제나 상호감시 시스템 등으로 인해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의 삶의 영역’이<sup>148</sup>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자유권규약 제17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이 될 여지가 있다.

<sup>147</sup> 북한이탈주민 김홍민(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48</sup> ‘사생활(privacy)’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인권이사회는 *Coeriel and Aurik vs. The Netherlands* 통보 심의를 통해 사생활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의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HRC Communication, *Coeriel and Aurik vs. The Netherlands*, No. 453/1991 (1994).

## 5.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4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서는 안 되며,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됨을 선언하고 있다. 동 조의 내용은 북한이 1981년 9월 14일 비준한 자유권규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협약 당사국의 법적의무로 규정되었다.<sup>149</sup> 자유권규약 제8조 제1항은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하며,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동 조 제3항(a)는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강요된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제3항(b)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중노동의 예외적 상황을 명시하고, 제3항(c)에서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강제노동’에 관한 정의는 국제노동기구의 1930년 제29호 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 동 협약에 따르면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라고 정의된다.<sup>150</sup> 여기서의 처벌은 권리 또는 특권의 박탈의 경우를 포함하며, 형사 처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sup>151</sup> 강제노동인지 여부는 노동의 종류나 성격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가가 경제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하거나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sup>152</sup>

<sup>149</sup> 각주 117 참고.

<sup>150</sup> 강제근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29호, 1930, 제2조 1항, 2항.

<sup>151</sup>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p. 379~380.

<sup>152</sup> 임예준,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개선 방안,”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16-06, 2016.2.19.), p. 3.

북한 해외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해외 노동자가 열악한 근로환경과 생활환경에 있음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강제노동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와는 다른 개념이다.<sup>153</sup>

강제노동 성립여부에 있어 일차적 기준인 자발성 요소를 살펴볼 때, 모든 북한 해외노동자가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sup>154</sup> 근로개시의 자발성은 ① 파견신청 동기와 ② 파견 과정 뇌물 공여 여부에 관한 질문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해외파견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해외파견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파견신청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 힘이 들더라도 해외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답했다[예 1, 2, 3].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세상 구경이나 좀 하자”는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대답하는 북한이탈주민도 더러 있다[예 4, 5].

#### 예 1 | 90년대 초중반 러시아 별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 증언

“외국 3년 갔다 오면 TV도 놓고 살고 냉동고도 놓고 살고 오토바이도 가지고, 차는 없어도. 차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냉장고, TV 놓고 살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야 된다.”<sup>155</sup>

<sup>153</sup> 자세한 내용은, Yejoon Rim,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Opportunity to work or risk of forced labour?”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Vol. 35 (I) (2017), pp. 56~57 참고.

<sup>154</sup>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 380.

<sup>155</sup> 북한이탈주민 김강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 예 2 | 90년대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 증언

“할 수 없이 거기 또 나갔다가 이래 그렇게 하고 생활도 계속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하자니까 외국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돈도 벌어들이고 자기 가고픈 직위에도 직장 동기고 그렇게 해서 회사에 나도 한 번 가보자 하고 오게 된 동기는 그래서.”<sup>156</sup>

### 예 3 | 2000년대 초반 러시아 벌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 증언

“하다못해 장사밀천이라도 조금...그러려고 들어갔죠. 또 딸이 있었는데 자식에게 강냉이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이려고...”<sup>157</sup>

### 예 4 | 90년대 러시아 벌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 증언

“떠날 때는 세상 구경이나 좀 하자 하고 떠난 게 이렇습니다. [그런 기대도 있으셨나요? 북한에서는 통제가 심하잖아요? 생활통제, 그런 걸 벗어나고 싶은?] 예.”<sup>158</sup>

### 예 4 | 2010년대 초 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 증언

“...내 자체는 도대체 호기심 나더라고. 도대체 이거. 어케 사는지. 세계가 어케 사는지. 나갔다 온 놈이 수군수군 자기네들 끼리 말해요. 나가니까 어쨌든간에 좋긴 좋더라. 먹는 것도 잘 먹고. 잘 먹는다는게 북한보다 잘 먹는다는 소리지. 여기 한국 보다는 잘 먹는다는 소리는 아니고. 어쨌든 밥은 배불리 먹으니까. ...나가면 잘 먹고. 이따금씩 구경이라도 시내도 돌고 그러니까. 그저 그 소리 들으면, 그저 나도 뭐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하고선 나왔죠. 힘들거 알면서도.”<sup>159</sup>

<sup>156</sup> 북한이탈주민 현태준(가명), 2016년 10월 4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57</sup> 북한이탈주민 민다혁(가명), 2016년 10월 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58</sup> 북한이탈주민 나진구(가명), 2016년 10월 1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59</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웨이트와 러시아 건설현장에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파견을 경험한 후 북한 사회와의 차이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연유로 재파견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예 6].

예 6 |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중반 네 차례에 걸쳐 쿠웨이트와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북한에서 해외 나가는 사람들 보면 해외파견은 마약과 같아요. 왜 그런가? 북한 노동자들이 한 번 해외 나가서 세계를 보고 들어가죠? 고생은 끔찍히 하죠. 가정생활도 다 파탄 나고 나가서 버는데, 해외 처음 나가면 눈에 척 안겨 오는 자유의 세계가 보여요. 어쨌건 나는 가서 죽도록 일을 해도 그 세계가 움직이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보이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우리 북한의 내부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천대받고 오는데, 그래도 북한에 들어가면 그 세계 보고 온 생각이 머릿속에 싹 차 있죠? 그런데 북한에 가서 말 못한단 말이야. ...말하면 또 선전으로 돼. 나쁜 자본주의 세계를 선전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나쁘다, 김정은이 나쁘다’ 세계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쁘지, 해외 나가서 보면 북한 세계 나쁜 건 다 알지. 알고선 집에 가서도 말 못한단 말이야. 자기 와이프한테도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또 가게 된단 말이야 해외를.”<sup>160</sup>

파견 과정에서의 뇌물 공여 여부 역시 이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파견을 신청해 근로를 개시했음을 보여준다.

예 1 | 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러시아 별목 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그거야 뭐 응당하죠. 뇌물 없이는 들어가기 힘들죠. ...현금으로 고였죠. 80년대 중반에 혹시 어느 정도 고이셨는지 기억나

<sup>160</sup> 북한이탈주민 김홍민(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세요?] 그때 그저 한 북한돈으로 한 400만 정도니까... [그러면 2000년대 중반에 파견 가실 땐 어느 정도 고이셨나요?] 한 400달러? ...북한돈으로 줬는데요, 환산하면 한 400달러 정도 된다 소리죠. ...뇌물 주는 건 본인이 무슨 딱 누구한테 주겠다 이런 게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재소 보는 도에, 도당에 재소 보는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아는 사람한테 직접 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그 사람 모르면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선 그 사람 선으로 해서 이것 좀 전달해 달라 이변에 좀 가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sup>161</sup>

#### 예 2 |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

“뇌물은 뇌물이고. 제가 직장에 후방사업을 했으니까. ...좀 명절 때 이렇게. ...직원들하고 고기랑 내주는 거 있는데 그런 거 좀 보상에 줬으니까요. 한 600불 썼는데. [600달러면 현금으로 주신 겁니까?] 제가 현금 갖고 가서, 물건을 거기랑 다 사 가지고, 노동자들 다 나눠줬으니까요.”<sup>162</sup>

#### 예 3 | 2010년대 초·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돈 없는 사람은 100달러나 고이고, 나 이거 보내 주는 데로 보내주시오. ...그답에 돈 좀 있고, 자기가 딱 여기 가겠다는 하는 사람은 100달러 더 고이죠. 100달러 더 고이고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몇 건설 가겠다, 움스크 몇 건설 가겠다, 페테르부르크 1건설 가겠다, 2건설 가겠다 하는 경우. ...돈 받아간 놈은 문건 따로 뽑아서 거기에 넣어주면 되는 거고, 돈 안고인 놈은 그저 100달러 정도는 다 고이니까. ...응당 간부 사업도 문건 잘하지 않는 놈은 고여야겠구나 해서 일반적으로 50달러내지 100달러는 다 고이죠. 쥐야 되니까. 주지 않으면,

<sup>161</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학(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62</sup> 북한이탈주민 정경석(가명), 2016년 10월 23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야이 새끼 이 만한 돈도 없는 새끼야 하고 문건 보고서 불합격하게 되면 불합격 놓으니까. 그럼 해외 못나가죠.”<sup>163</sup>

물론 한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만’에 의한 파견으로, 자발적인 파견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sup>164</sup> 당국 차원의 기만에 의한 파견이었는지 여부는, 해외파견에 대한 국가 공고를 접했고, 이러한 공고 내용에 있어 기만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파견에 대한 당국 차원의 모집공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업소 단위의 간부급에게까지는 전달이 가지만, 파견 노동자들이 이를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대부분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공고를 접했다고 답변했으며, 해외파견을 하는 기업소를 직장을 옮기고 신청을 했다고 한다.<sup>165</sup>

#### 예 1 | 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러시아 별목 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대체로 알려 안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저 해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실지로 알아보고 그래서.”<sup>166</sup>

#### 예 2 | 90년대 러시아 별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공고를 본 게 아니고, 그걸 전달받았습니다. 구두로. 공고도 도노동국에서 봤어요. [공지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해외파견 지도원이 있어요. 전문. 그 사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sup>167</sup>

<sup>163</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64</sup> 신창훈·고명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인권,” p. 23.

<sup>165</sup>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 380.

<sup>166</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화(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67</sup>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 9월 28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 예 3 | 90년대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 증언

“그런 건 없어요. …해당 단위 당위원회에서. 당이라고 알지요? 당위원회 그거 내려와 명단이가 이번에는 소련에 몇 명 가고 쿠웨이트에 몇 명 가고 독일에 몇 명. 그런 명단이 내려오는 거 있어요. 당위원회에서 사람을 뽑고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한테 잘 보인 사람. …물어보고 가겠다고 추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서도 그 사람에게 대한 그제 있어야 되거든요. [아, 좀 뇌물을 좀 가지고 와서?] 예.”<sup>168</sup>

### 예 4 | 2010년대 초·중반 쿠웨이트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노동자들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내려가죠. 사업소 단위 간부에서 직장 간부급까지 그렇게.”<sup>169</sup>

이러한 증언들을 토대로 볼 때,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기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파견의 경우가 빈번한 것을 볼 때, 이러한 해외파견이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 예 1 | 90년대 러시아 벌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기계공들. 기계 잡고 있는 사람들. 자동차운전수, 트랙토르, 불도저, 그담에 산지 턱공들. 산 조재하는데 또. 산채하는데 조재공들이 또 있어요. 모든 일체 기계 움직이는 사람들은 권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온게. 차를 몰았기 때문에. …[즉시 들어갈 수 있는거예요?] 네. 제가 휴가 대상이라고. 기계공들을 휴가 대상이라고 해요. 재파견을

<sup>168</sup> 북한이탈주민 현태준(가명), 2016년 10월 4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69</sup> 북한이탈주민 조명택(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문건에 다 되어있지요. 문건을 제가 소각시키면, 언제든지 나 더 안들어가겠습니다 하면 파기시키면 되요. 자기가 파기하겠다고 안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며칠 있다가 들어가 신거예요?] 두 달.”<sup>170</sup>

### 예 2 | 2010년대 초·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재파견 많은, 재파견 더러 있어요. …여기 로씨야에 나와야 돈 생기고, 돈 좀 되고, 가정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계속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요. …뭘 결함이 있었다 해도 다 나올 수는 있어요. 뭘 돈 주면, 내가 어디 달아났던 경력이 있어도 와요. 달아났었다 어디 회사에서 있다가 일하다 몇 개월 뭘 6개월, 나가서 6개월 있다가 들어왔다. 이런 것도 보워지도원들하고 사업을 해요. 200달러 내라, 300달러 내라. 뭘 하는 거 있어요. 뭘 주면 그런 거 먹고 뭘 해주고 그래요.”<sup>171</sup>

### 예 3 | 2010년대 초·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마지막 들어갈 때 다 평가서를 써요. 보위원이. 특별하게 제기된 게 없습니다. 요 몇 글자가 커요. 제기 되는게 없다하는 경우, 해외에서 생활 잘했다는 거니까. 들어오게 되면, 2년동안 생활하다가, 그답에 다시 또 해외나갈 수 있는.”<sup>172</sup>

한편, 근로개시의 자발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의 계속에 있어서의 강제가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 종료의 자율성, 즉, 원하는 경우 본국으로의 귀환이 가능한지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직 의사 표명 시 수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sup>170</sup>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 9월 28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71</sup> 북한이탈주민 나인현(가명), 2016년 10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72</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답변에 따르면, 근로종료가 일부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무리한 노동 강도로 인한 휴식 의사의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173</sup>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북한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경우 해외파견을 중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예 1, 2, 3].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경우에도 해외파견 중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유는 일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있다[예 4].

#### 예 1 | 90년대 러시아 벌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가겠다면, 아프다면 다 보내줘요. 일 못하겠습니다 하면. ... 문제될 것도 없었어요.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요. ...저하고 같이 들어왔던 사람 중에 3명이 그랬어요. 15명 중에서 3명이 그랬어요.”<sup>174</sup>

#### 예 2 | 2000년대 초반 러시아 벌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 증언

“나는 뭐 아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가겠다고 하면 보내줘요. ...가겠다고 하면, 북한 들어가겠다고 하면 보내줘요.”<sup>175</sup>

#### 예 3 |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중반 네 차례에 걸쳐 쿠웨이트 및 러시아 건설현장에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다 환자지 뭐. 할 수 없이 들여보내줘.”<sup>176</sup>

<sup>173</sup> 북한이탈주민 현태준(가명), 2016년 10월 4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그럴 수도 없어요. 거저 죽지 않거나 다리 부러지지 않은 정도면 계속 나가 일을 해야 돼요.”

<sup>174</sup>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 9월 28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75</sup> 북한이탈주민 민다훅(가명), 2016년 10월 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76</sup> 북한이탈주민 김홍민(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 예 4 | 2010년대 초·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그건 들여보내요. 가만 놔둬야 달아나니까. 너무 힘든 사람은 강짜로 일 시켜야. 죽던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그것도 부조돈을 모아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고 일어날까봐, 나 정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까 하게 되면은 조국에 들여보내요. 그런 거 곱게 보내요. 곱게 보내야지. 마지막에 도끼 들고서 소장을 까 죽일지, 지가 자살할지 그걸 어케 알아요. 그러니까 못 하겠다 하는 거는 곱게 보내요.”<sup>177</sup>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국 귀환 비용 등의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근로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예 1 | 2010년대 초·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네 막진 않아요. 가라 그러죠. 너 그 기차비용이랑 니가 갈 수 있는 돈 마련해서 가라, 긴다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없이 일해야죠. 기계 돼있어요. 절대 안 줘요 그것들은.”<sup>178</sup>

국제노동기구(ILO)는 자발적인 노동이라 하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의 여러 요인에 의해 강제노동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부채로 인한 결박, 임금연체, 신분증의 압수, 취약성의 악의적 이용 여부 등을 관련 지표로 제시했다.<sup>179</sup>

<sup>177</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78</sup> 북한이탈주민 김석영(가명), 2016년 10월 1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79</sup> ILO Indicators of Forced Labour, *Special Action Programme to Combat Forced Labor* (29 October 2013), pp. 3~25. ILO는 강제노동 정의에서 도출되는 성립요건인 처벌의 위협이나 강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강제노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11개의 지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① 취약성의 악용, ② 기간, ③ 이동의 제한, ④ 고립, ⑤ 신체적 및 성적폭력, ⑥ 협박과 위협, ⑦ 신분증명

북한 해외노동자는 출국 과정까지는 필요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되, 현지 입국을 하자마자 신분증을 압수당한다[예 1, 2, 3]. 이러한 신분증 압수의 이유는 대부분 도주의 염려 때문이라고 증언한다.<sup>180</sup>

**예 1 | 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러시아 별목 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들어갈 때 하산 통과할 적에, 하산 들어갈 적에 두만강 넘어서 하산 들어가서 거기서 세관검사 할 때 거기서 여권 주고 세관 검사 끝난 다음에 한다.”<sup>181</sup>

**예 2 | 90년대 중반 쿠웨이트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여권은 쿠웨이트 게이트 나갈 때 한 번 받았다가 지나서 다시 반납했고, 그다음에 끝이에요. …귀국할 때는 나올 때 또 반대로. 또 게이트 앞에서 줬다가 다시 환수하는 거죠. 노동자 들한테 절대 안줘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 선배들.”<sup>182</sup>

**예 3 | 2000년대 초반 러시아 별목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 증언**

“두만강 세관 넘으면 여권 다 몰수를 합니다. 달아난다고. …우리는 여권 얼굴도 못 봐요. 세관넘어갈 때 여권 나눠줬다가 끝나면 또 다 걷어가고.”<sup>183</sup>

서 압수, ⑧ 임금연체, ⑨ 부채로 인한 결박, ⑩ 열악한 근로 및 생활조건, ⑪ 장시간 노동이 해당한다.

<sup>180</sup> 북한이탈주민 김청화(가명), 2016년 9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출국할 때까지. 현지 나와서는 안줘요. 달아나니까.” 북한이탈주민 이승훈(가명), 2016년 9월 28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국경을 넘어서서 러시아 땅만 들어서면, 모두 다 회수해요. …그거 가지고 다른 데로 또 달아날까봐 그러죠. …[그럼 언제 줘요?] 그거 귀국할 때 주지요.”

<sup>181</sup> 북한이탈주민 홍승학(가명), 2016년 10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82</sup> 북한이탈주민 최순우(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83</sup> 북한이탈주민 민다혁(가명), 2016년 10월 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신분증 압수를 하는 주체는 안전부(경찰),<sup>184</sup> 책임자,<sup>185</sup> 당위원회<sup>186</sup>라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북한 당국이 아닌 현지 회사 차원에서 신분증을 압수했다는 증언도 있다[예 1, 2]. 한편, 이렇게 신분증을 압수당한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현지에서는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 사본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한다.<sup>187</sup>

#### 예 1 | 2010년대 초중반 러시아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러시아 때, 우리 원래 여권 가지고 다녔었는데, 사람들 너무 없어진다고 종잇장을 줬거든요. …여권은 다 회사가 거둬들이고. …들어가서 회사에서 다 걷어요.”<sup>188</sup>

#### 예 2 | 2010년대 초중반 쿠웨이트 건설현장 파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380만의 외국인이 와서 일을 하니깐. 이 사람들이 쿠웨이트 어느 회사 거주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그 회사에서 일 안 하고 나가서 다른 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쿠웨이트는 비행장에서 우리로 말하면 노동부 이런데서 나와서, 비행장에서 내

<sup>184</sup> 북한이탈주민 현태준(가명), 2016년 10월 4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나가자마자) 안전부에 다 바쳐야 해요” 북한이탈주민 신강섭(가명), 2016년 10월 6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우리가 갈 때는 여권은 내가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요. 그 다음에는 경찰이 몽땅 다 뺐어요 안 줘요 여권을 다 뺐어요” 북한이탈주민 나진구(가명), 2016년 10월 17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도착하면 시간 썩 넘어가면, 넘어가기 전에 여권 훔다가 그 시간 썩 통과하면 몽땅 회수하니까 본인이 여권 쥐고 5분도 못 있어요. …안전부에서, 경찰에서 다 거둬가지고”

<sup>185</sup> 북한이탈주민 나인현(가명), 2016년 10월 5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내꺼 증명서 여권은…우리 책임자가 다 모아가지고 갔어.”

<sup>186</sup> 북한이탈주민 이종우(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소지를 못하고 거기서는 저거 당위원회에 다줘요.”

<sup>187</sup> 북한이탈주민 김홍민(가명), 2016년 9월 29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여권은 썩 회수하고, 컴퓨터 복사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종잇장을 가지고 있죠.”

<sup>188</sup> 북한이탈주민 김석영(가명), 2016년 10월 10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리죠? 그러면 입국 수속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회사 노동  
부에서 나와서 여권 다 회수해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북한 회  
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sup>189</sup>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례  
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상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신분증명서는 압수되어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자, 책임자 또는 현지 회사가 보관하며, 이들의 생활은 전반  
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자에 의해 통제된다. 이들은 대부분  
항공교통비, 비자 수수료 등의 빚을 안고 근로를 개시하는데, 현지에  
도착해 몇 개월간은 파견에 소모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무보수 노동  
을 하게 된다.<sup>190</sup> 이처럼 북한 당국 관리자에 의한 생활통제, 신분증의  
압수와 파견이후 자동적으로 지게 되는 채무 등은 자발적 의사로 해외  
파견을 신청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의사  
에 반해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여지가 있다.<sup>191</sup>

<sup>189</sup> 북한이탈주민 조명택(가명), 2016년 10월 12일, 통일연구원에서 면접.

<sup>190</sup>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 381; 임예준,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개선 방안,” p. 3.

<sup>191</sup> 임예준,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개선 방안,” p. 3; 임예준, “북한해의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문제,” 제73차 전문가 포럼 (서울: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p. 14.



## V.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의 전체 규모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의 규모를 4만 6천 명에서 6만 명이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 숫자가 최고 14만 명 이상 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물론 이는 아직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세계 경제의 호·불황이나 대북한 경제제재 수준의 변화 등의 변수에 따라 부침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의 의의는 생각보다 해외파견 노동이 북한의 경제에 더 중요한 요소 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숫자를 추정하는 것 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현 정부는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해외노동력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해 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히 배경과 사상성,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선발과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 안전의 측면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안전 교육과 안전 장구 지급 외에는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장애 발생 시 사후 보상의 안전 대책 또한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 이 노동자들은 탈주를 막기 위한 상시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사생활에 대한 일상적인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이들을 강제노동의 희생자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여러 인터뷰와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노동자들은 대개 자발적으로 해외파견 노동에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몇몇 노동자들의 경우 스스로 재파견을 원해 뇌물을 써가면서까지 해외 재파견을 나왔다는

점, 또한 노동자들이 원할 경우 파견을 종료하고 귀국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을 강제노동으로까지 정의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여권이 북한 당국 혹은 고용회사 등에 의해 압수된다는 점, 많은 경우 파견 초기에는 파견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갚기 위해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는 점 등은 강제노동에 처할 수 있는 상황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보완 방향을 지적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니, 해외파견 노동 범위가 러시아와 중동 만으로 좁혀졌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연구가 중요할 것인데, 관련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 중국 당국의 비밀주의 때문에 그 실체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유럽 등의 현지 조사를 통해 북한 해외파견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온 파견 노동자들 및 현지 노동자들과의 임금 수준, 계약 관계, 그리고 노동 환경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비교하는 거시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박찬홍. 『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 서울: 코리아정책연구원, 2012.
- 신창훈·고명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인권』.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5.
-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예원기획, 2012.
- 임예준 외.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Sarah Joseph & Melissa Casta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조명철·김지연.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최영윤.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호.
- 이애리아.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 실태.” 도쿄, 일본: 통일연구원·와세다대·리츠메이칸대·서울대 공동주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에서의 노동력이동: 해외파견북한노동자 사례」 발표문. 2017.
- 이종석.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경제 실상.” 『정책브리핑』. No. 2016-21, 2016.8.22.
- 임예준. “북한해외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문제.” 제73차 전문가 포럼. 서울: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Yejoon Rim.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Opportunity to work or risk of forced labour?”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Vol. 35 (I) 2017.

『조선일보』.

임예준.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개선 방안.”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16-06, 2016.2.19.

『凤凰周刊』.

『澎湃新闻』.

CIA, The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

HRC. General Comment. No. 16.

HRC Communication. *Coeriel and Aurik vs. The Netherlands*. No. 453/1991. 1994.

ILO. Indicators of Forced Labour. *Special Action Programme to Combat Forced Labor*. 2012.

UN Doc. C/N/467.1997. 1997.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5 Human Rights Report.” <[www.state.gov](http://www.state.gov)>.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포츠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원

####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민외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욱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욱 외	20,000원

**연구보고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북한인권 ■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2호	이금순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 · 도시정치 · 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 · 사회 · 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운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하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3,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	----------------------------	-------

연례정세보고서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8,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

10,000원

##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b>※도로명 주소 기입必</b>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www.kinu.or.kr](http://www.kinu.or.kr)



9 788984 798762

ISBN 978-89-8479-876-2